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12. 17.(수) 12:00 배포 2025. 12. 16.(화) 15:00

2024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

담당 부서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책임자	과 장	김지은 (042-481-2233)
		담당자	사무관	오복주 (042-481-128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일 러 두 기

□ 육아휴직통계는 저출생 대응 및 일·가정양립 정책수립·평가 지원을 위해 2020년에 개발하여 매년 작성하고 있음

○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11종 행정자료 및 통계자료를 연계하여 작성하며, 시의성을 고려하여 잠정(p)과 확정체계로 공표

○ 육아휴직통계는 당해연도 육아휴직 시작자 대상으로 집계하며, 부록의 '자주하는 질문'을 참조

< '24년 육아휴직통계 변경사항 >

○ 육아휴직 확대 정책 지원을 위해, **출생아 부모의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률***[참고지표] 신규 작성하여 제공

* 기존 '출생아 부모의 출생연도 육아휴직 사용률' 제공과 함께, '출생아 부모의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률' 확대 제공

출생아 부모의 출생연도 육아휴직 사용률 (본 지표)	출생아 부모의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률 (참고 지표)
기준연도 출생아 부모 중 기준연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부모의 비율	기준연도 출생아 부모 중 자녀 출생일 이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시작한 부모의 비율

○ 육아휴직통계의 **기업체 규모를 세분화***하여 제공

* (기존) 4명 이하, 5~49명, 50~299명, 300명 이상 → (세분화) 50~99명, 100~199명, 200~299명

□ 출산휴가통계(22쪽)는 고용보험 자료만을 활용하여 미대상자인 공무원, 교사 등은 제외되고, 배우자 출산휴가(父)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만 집계되어 있어 활용에 유의

□ 보도자료에 수록된 숫자는 반올림한 값으로, 각 항목의 합계 또는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보도자료는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https://mods.go.kr)에 게시하였고, 통계표는 국가통계포털*(KOSIS, https://kosis.kr)에서 이용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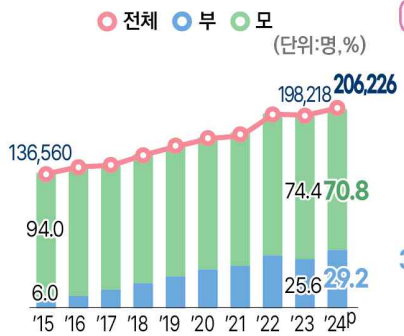
* 국가통계포털 > 국내통계 > 주제별통계 > 노동 > 육아휴직통계(2010~2015년, 2015년 이후)

국가데이터처
Ministry of Data and Statistics

2024년 육아휴직통계



전체 육아휴직자



연령대별(%)

부		모
3.5	30세 미만	9.3
24.9	30~34세	42.9
38.7	35~39세	33.0
32.9	40세 이상	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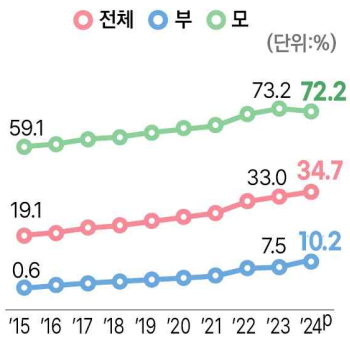
기업체 규모별(%)

부		모
67.9	300명 이상	57.7
14.8	50~299명	15.0
12.7	5~49명	21.2
4.3	4명 이하	5.7

산업별(5순위, %)

	부		모	
1	제조업	22.3	보건·사회복지업	20.3
2	공공행정	19.6	공공행정	14.5
3	전문·과학·기술업	10.6	교육서비스업	11.1
4	도·소매업	7.8	제조업	10.9
5	정보통신업	6.0	전문·과학·기술업	9.9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연령대별(%)

부		모
11.8	30세 미만	75.9
11.0	30~34세	74.6
9.9	35~39세	68.1
8.0	40세 이상	6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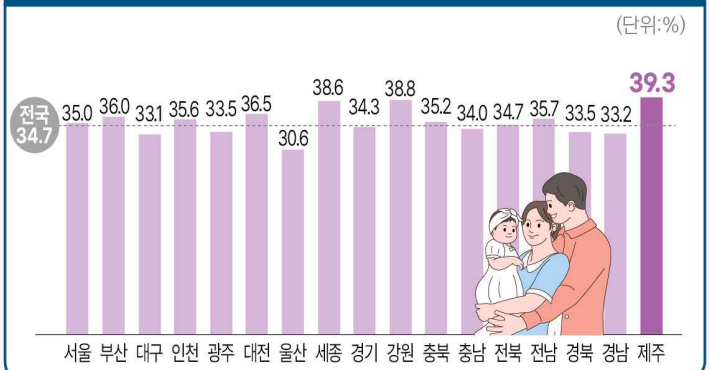
기업체 규모별(%)

부		모
12.5	300명 이상	78.4
9.2	50~299명	79.9
7.2	5~49명	67.5
6.2	4명 이하	41.0

산업별(5순위, %)

	부		모	
1	공공행정	16.1	공공행정	81.1
2	운수·창고업	14.8	사업시설·지원업	79.8
3	사업시설·지원업	13.7	보건·사회복지업	79.3
4	보건·사회복지업	10.8	금융·보험업	75.3
5	숙박·음식점업	10.8	운수·창고업	7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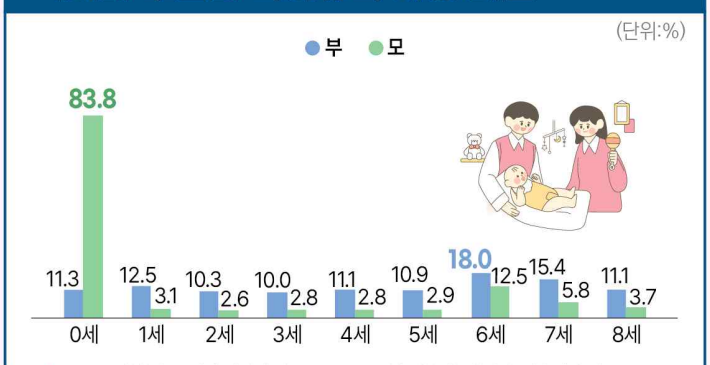
시도별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출생아 부모 중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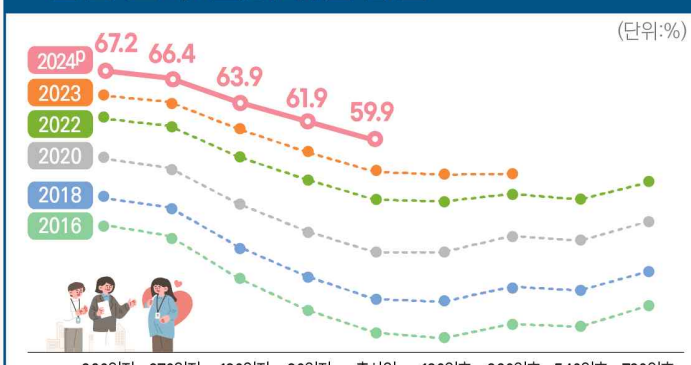


1자녀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



* '15~'24년까지 '15년 출생아만 있는 부모 중 육아휴직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는 부모

출산 전·후 모의 취업 비율



목 차

□ 2024년 육아휴직통계(요약) ····· 1

□ 2024년 육아휴직통계 결과

1. 전체 육아휴직자(임신 중이거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대상)
가. 전체 육아휴직자 추이 ····· 4
나. 연령대별 전체 육아휴직자 ····· 5
다. 기업체 규모별 전체 육아휴직자 ····· 6
라. 산업별 전체 육아휴직자 ····· 7
마. 시도별 전체 육아휴직자 ····· 8

2. 출생아 부모의 출생연도 육아휴직
가. 육아휴직 추이 ····· 9
나. 연령대별 육아휴직 ····· 11
다. 기업체 규모별 육아휴직 ····· 12
라. 산업별 육아휴직 ····· 13
마. 시도별 육아휴직 ····· 15

[참고지표] 출생아 부모의 12개월 이내(0세아) 육아휴직 ····· 17

3. 1자녀 부모 육아휴직 사용 현황(전기간 2015~2024년)
가. 자녀 연령별 육아휴직 사용 비율 ····· 19
나. 육아휴직 사용횟수 비율 ····· 20

4. 출산 전·후 모(母)의 취업 비율 ····· 21

5. 출산휴가자 ····· 22

□ 통계표 ····· 26

◇ 부록
1. 육아휴직통계 개요 ····· 58
2. 자주하는 질문 ····· 59
3. 한국표준산업분류 ····· 67

2024년 육아휴직통계 (요약)

1. 전체 육아휴직자(4~8쪽)

□ **'24년 전체 육아휴직자***는 20만 6,226명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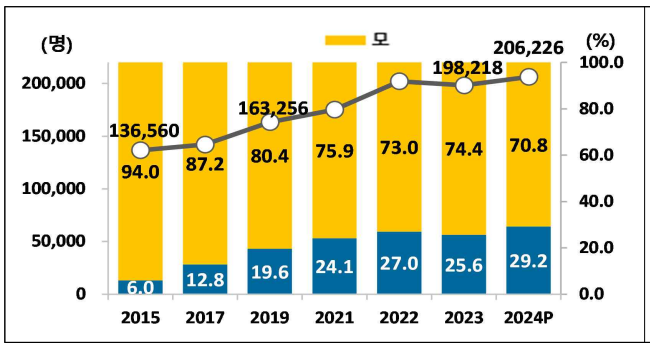
* 임신 중이거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자

○ '24년 전체 육아휴직자 중 모(母)는 70.8%, 부(父)는 29.2%로 전년 대비 부(父)의 비중이 3.5%p 높아졌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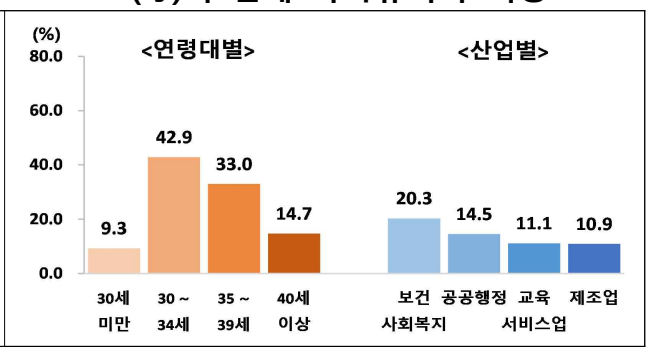
○ 모(母)의 연령대는 30~34세(42.9%)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전년 대비 40세 이상 비중은 0.6%p 낮아졌고, 30~34세 비중은 1.6%p 높아졌음

○ 모(母)의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0.3%)에서 가장 높았음

< 전체 육아휴직자 및 비중 >



< 모(母)의 전체 육아휴직자 비중 >



2. 출생아 부모의 출생연도 육아휴직(9~1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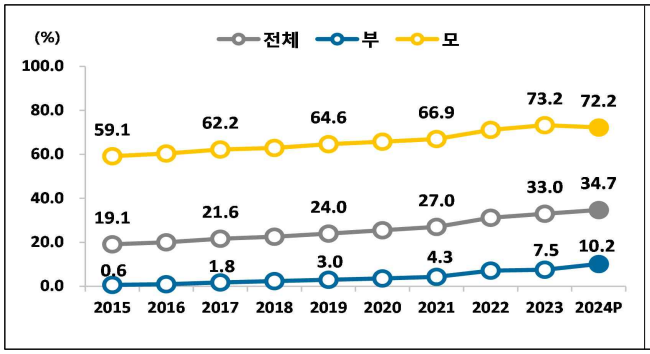
□ **'24년 출생아 부모의 '24년 육아휴직 사용률***은 34.7%로 전년 대비 1.7%p 상승하였음

* 육아휴직 사용률=(육아휴직자/육아휴직 대상자)×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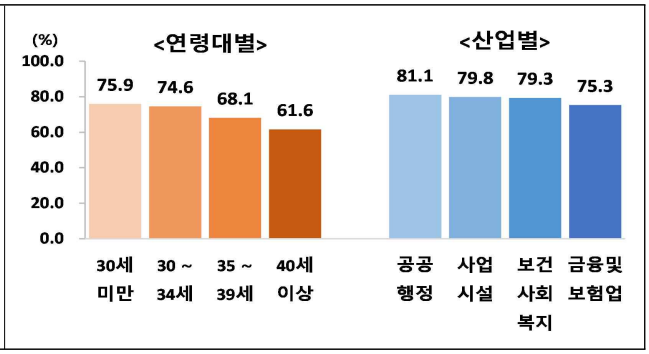
○ '24년 출생아 부모의 '24년 육아휴직 사용률은 부(父) 10.2%, 모(母) 72.2%로 전년 대비 부(父)는 2.7%p 상승하였고, 모(母)는 1.0%p 하락하였음

○ 출생아 모(母)의 연령대별 육아휴직 사용률은 30세 미만(75.9%)에서 가장 높았고, 산업은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1.1%)에서 가장 높았음

<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



< 출생아 모(母)의 육아휴직 사용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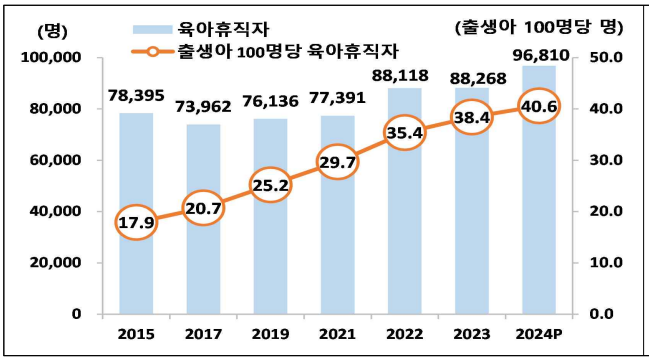


□ **'24년 출생아 부모 중 '24년 육아휴직자**는 9만 6,810명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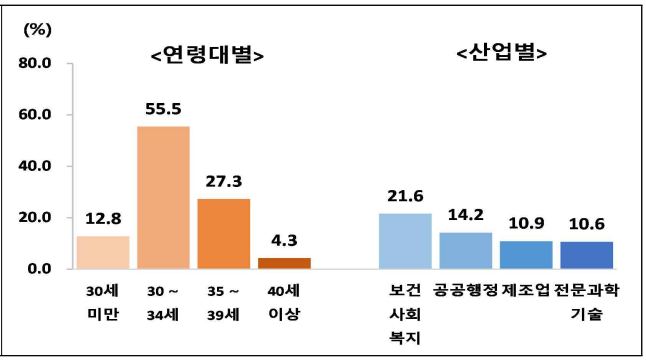
○ '24년 출생아 부모 중 '24년 육아휴직자를 출생아 100명당으로 보면, 40.6명으로 전년 대비 2.2명 증가하였음

○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을 한 모(母)의 연령대는 30~34세(55.5%)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1.6%)에서 가장 높았음

< 출생아 부모 중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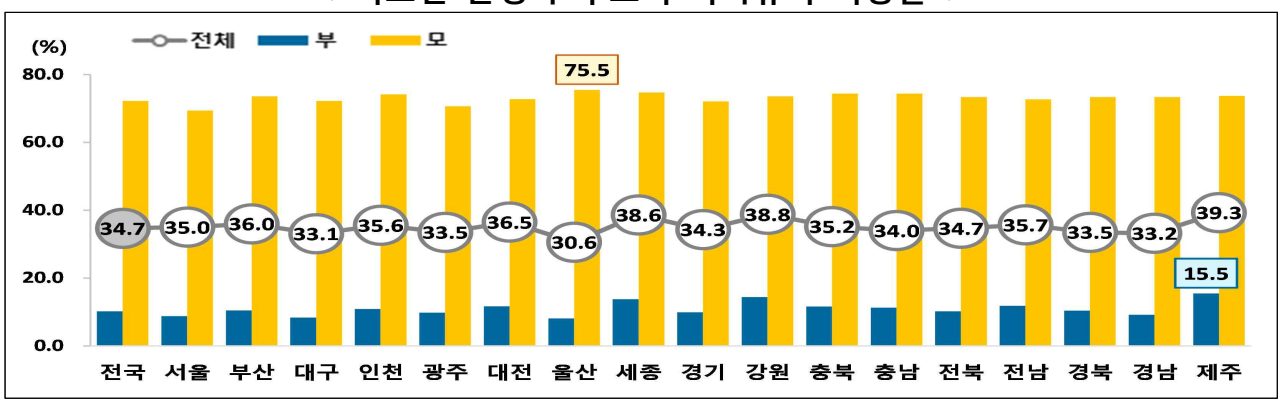
< 출생아 모(母)의 육아휴직자 비중 >



□ **시도별 '24년 출생아 부모의 '24년 육아휴직 사용률**을 보면, 제주 39.3%, 강원 38.8% 순으로 높았고, 울산 30.6%, 대구 33.1% 순으로 낮았음

○ 출생아 모(母)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울산(75.5%)이 가장 높았고, 부(父)는 제주(15.5%)가 가장 높았음

< 시도별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



[참고] 출생아 부모의 12개월 이내(0세아) 육아휴직 사용률(17~18쪽)

○ '23년도 출생아 부모의 '23년(출생연도) 육아휴직 사용률은 33.0% 였으며, 대상기간을 출생연도 뿐 아니라 출생 후 12개월 이내로 확장해 보면, 육아휴직 사용률이 43.7%까지 상승하였음

<육아휴직 사용률(참고지표 vs 본지표) **비교 >**

(단위: %, %p)

	출생아 부모의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률(참고지표)			출생아 부모의 출생연도 육아휴직 사용률(본지표)			차이 (A-B)
	전체(A)	부	모	전체(B)	부	모	
2021년	36.8	10.2	80.9	27.0	4.3	66.9	**9.8**
2022년	40.7	13.5	83.0	31.2	7.1	71.1	**9.5**
2023년	43.7	16.1	84.5	33.0	7.5	73.2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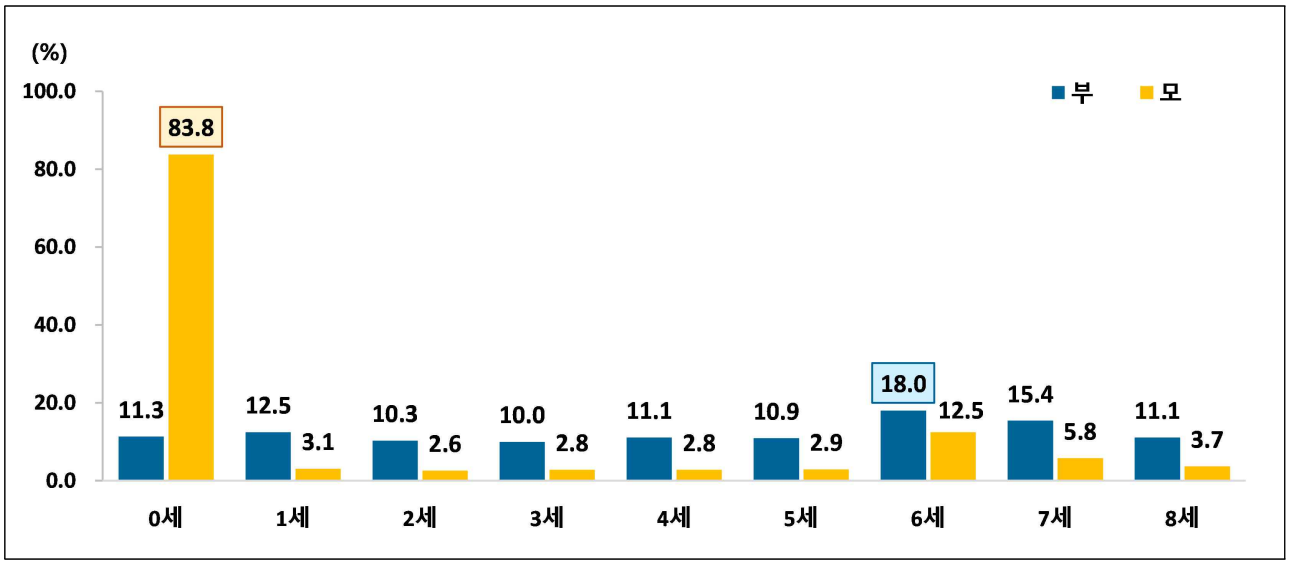
* 2023년 출생아 부모의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률은 잠정수치임

3. 1자녀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 현황(19쪽)

□ '15년 출생아의 1자녀 부모*를 대상으로 전 기간(0세~8세) 육아휴직 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부(父)는 자녀가 6세(18.0%) 때, 모(母)는 0세(83.8%) 때 가장 높았음

* '15~'24년까지 '15년 출생아만 있는 1자녀 부모 중 육아휴직을 한 번 이상 사용한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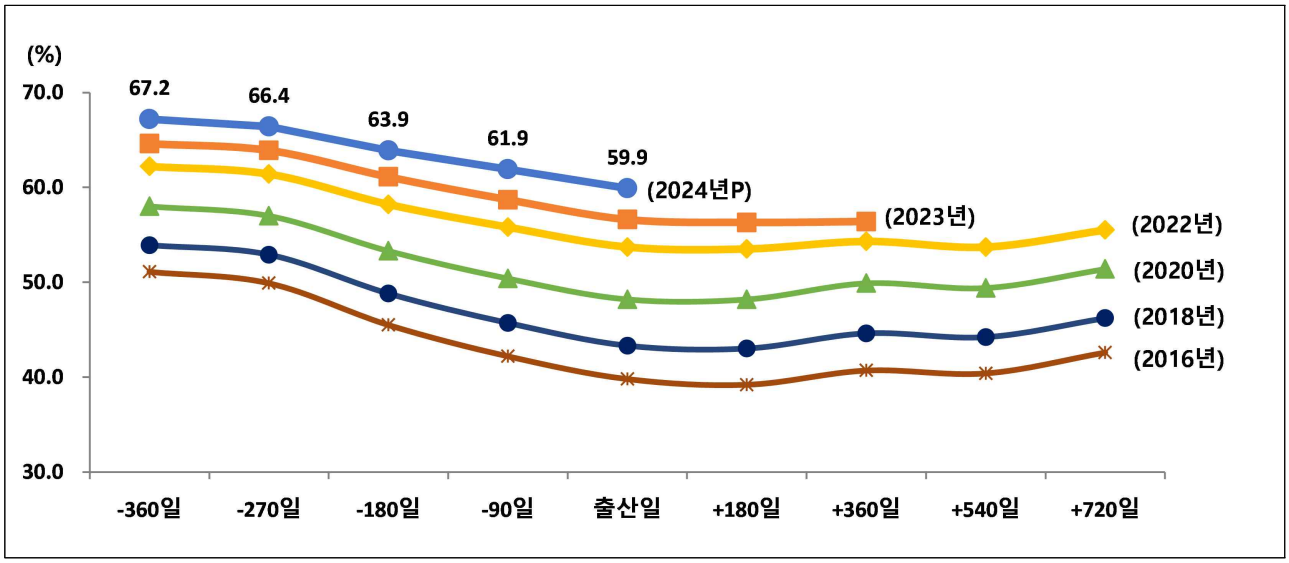
< 1자녀 부모의 자녀 연령별 육아휴직 사용 비율 >



4. 출산 전·후 모(母)의 취업 비율(21쪽)

□ '24년 출산 모(母)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59.9%가 취업자였고, 출산 360일 전(67.2%)보다 취업 비율이 7.3%p 낮아졌음

< 출산 전·후 모(母)의 취업 비율 >



2024년 육아휴직통계 결과

1. 전체 육아휴직자

가. 전체 육아휴직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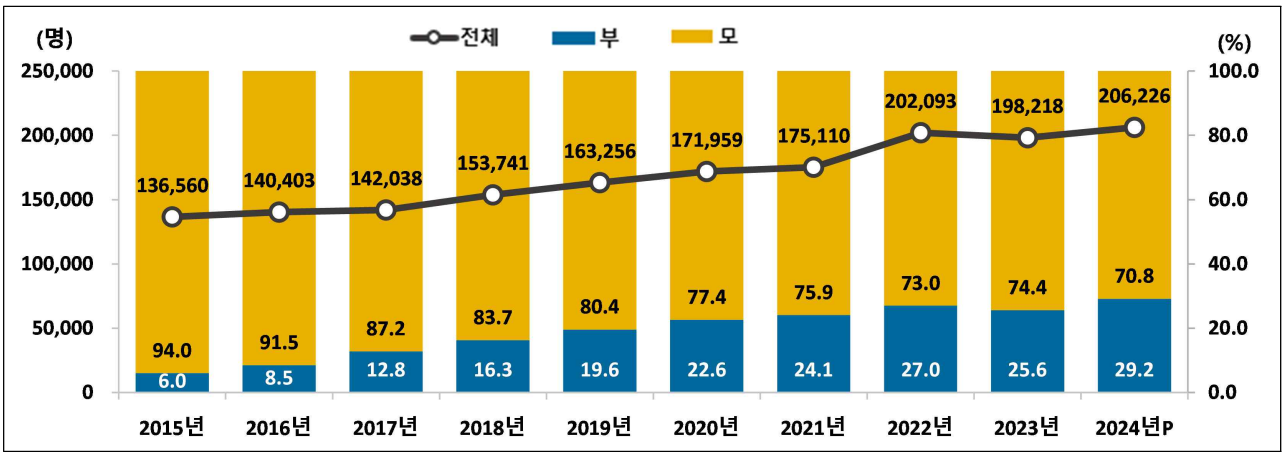
'24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20만 6,226명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

□ 임신 중이거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24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20만 6,226명으로 전년 대비 8,008명(4.0%) 증가하였음

* '23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여 '24년까지 육아휴직이 이어지는 경우 등 제외

○ 전체 육아휴직자 중 부(父)는 6만 117명으로 전년 대비 9,302명(18.3%) 증가하였으며, 모(母)는 14만 6,109명으로 전년 대비 1,294명(-0.9%) 감소하였음

○ 전체 육아휴직자 20만 6,226명 중 부(父)는 29.2%, 모(母)는 70.8%를 차지하였음



< 전체 육아휴직자 규모 및 비중 >

(단위: 명, %, %p)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p	전년 대비	
												증감	증감률
전체육아휴직자	계	136,560	140,403	142,038	153,741	163,256	171,959	175,110	202,093	198,218	206,226	8,008	4.0
	부	8,220	11,965	18,160	25,062	32,051	38,813	42,197	54,565	50,815	60,117	9,302	18.3
	모	128,340	128,438	123,878	128,679	131,205	133,146	132,913	147,528	147,403	146,109	-1,294	-0.9
비중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부	6.0	8.5	12.8	16.3	19.6	22.6	24.1	27.0	25.6	29.2	3.5	-
	모	94.0	91.5	87.2	83.7	80.4	77.4	75.9	73.0	74.4	70.8	-3.5	-

나. 연령대별 전체 육아휴직자

부(父)는 35~39세(38.7%), 모(母)는 30~34세(42.9%)에서 비중이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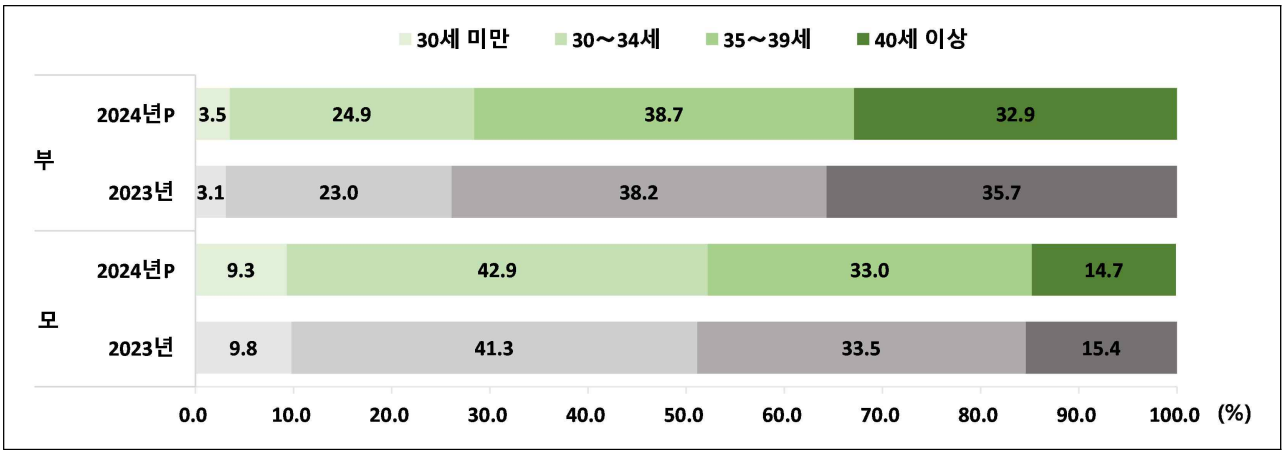
□ ‘24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부(父)의 연령대별 비중은 35~39세가 38.7%로 가장 높았고, 40세 이상(32.9%), 30~34세(24.9%), 30세 미만(3.5%) 순임

○ 전년 대비 연령대별 비중은 30~34세(1.8%p), 35~39세(0.5%p), 30세 미만(0.5%p)에서 높아졌고, 40세 이상(-2.8%p)에서 낮아졌음

□ ‘24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모(母)의 연령대별 비중은 30~34세가 42.9%로 가장 높았고, 35~39세(33.0%), 40세 이상(14.7%), 30세 미만(9.3%) 순임

○ 전년 대비 연령대별 비중은 30~34세(1.6%p)에서 높아졌고, 40세 이상(-0.6%p), 35~39세(-0.5%p), 30세 미만(-0.5%p)에서 낮아졌음

< 연령대별 전체 육아휴직자 비중 >



< 연령대별 전체 육아휴직자 >

(단위: 명, %, %p)

		2023년			2024년p			증감			증감률		
		전체	부	모	전체	부	모	전체	부	모	전체	부	모
전체육아휴직자	계	198,218	50,815	147,403	206,226	60,117	146,109	8,008	9,302	-1,294	4.0	18.3	-0.9
	30세 미만	16,032	1,554	14,478	15,785	2,124	13,661	-247	570	-817	-1.5	36.7	-5.6
	30~34세	72,644	11,701	60,943	77,663	14,949	62,714	5,019	3,248	1,771	6.9	27.8	2.9
	35~39세	68,746	19,422	49,324	71,475	23,291	48,184	2,729	3,869	-1,140	4.0	19.9	-2.3
	40세 이상	40,796	18,138	22,658	41,303	19,753	21,550	507	1,615	-1,108	1.2	8.9	-4.9
비중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	-	-	-
	30세 미만	8.1	3.1	9.8	7.7	3.5	9.3	-0.4	0.5	-0.5	-	-	-
	30~34세	36.6	23.0	41.3	37.7	24.9	42.9	1.0	1.8	1.6	-	-	-
	35~39세	34.7	38.2	33.5	34.7	38.7	33.0	0.0	0.5	-0.5	-	-	-
	40세 이상	20.6	35.7	15.4	20.0	32.9	14.7	-0.6	-2.8	-0.6	-	-	-

다. 기업체 규모별 전체 육아휴직자

부(父)와 모(母) 모두 기업체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체에 소속된 비중이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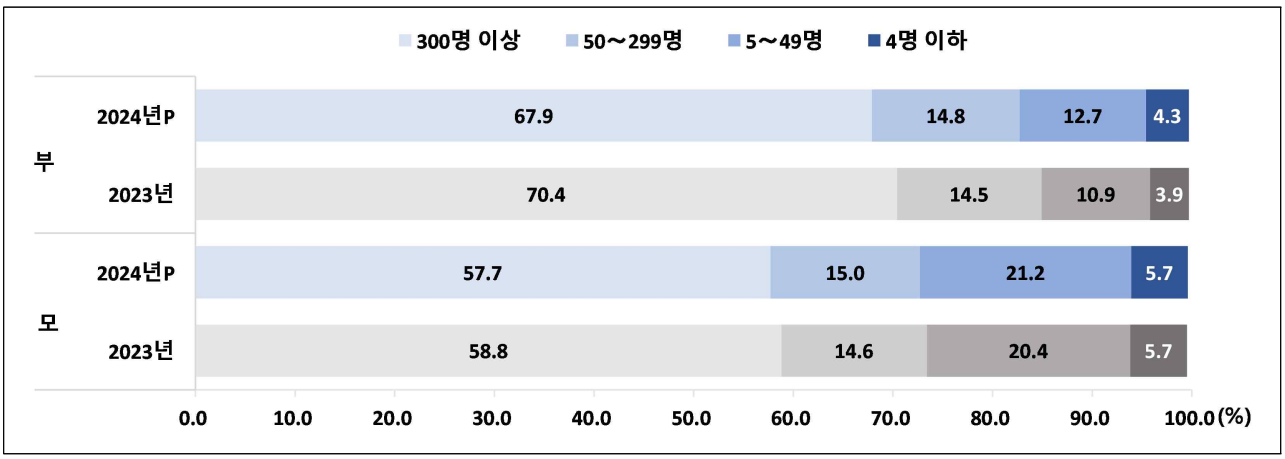
□ '24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부(父)의 67.9%가 기업체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체에 소속되어 있었고, 50~299명(14.8%), 5~49명(12.7%), 4명 이하(4.3%) 순임

○ 전년 대비 기업체 규모별 비중은 5~49명(1.8%p), 4명 이하(0.4%p), 50~299명(0.3%p)에서 높아졌고, 300명 이상(-2.5%p)에서 낮아졌음

□ '24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모(母)의 57.7%가 기업체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체에 소속되어 있었고, 5~49명(21.2%), 50~299명(15.0%), 4명 이하(5.7%) 순임

○ 전년 대비 기업체 규모별 비중은 5~49명(0.8%p), 50~299명(0.4%p)에서 높아졌고, 300명 이상(-1.2%p)에서 낮아졌음

< 기업체 규모별 전체 육아휴직자 비중 >



(단위: 명, %, %p)

		2023년			2024년P			증감			증감률		
		전체	부	모	전체	부	모	전체	부	모	전체	부	모
전체육아휴직자	계[1]	198,218	50,815	147,403	206,226	60,117	146,109	8,008	9,302	-1,294	4.0	18.3	-0.9
	300명 이상	122,504	35,759	86,745	125,079	40,810	84,269	2,575	5,051	-2,476	2.1	14.1	-2.9
	50~299명	28,907	7,386	21,521	30,871	8,918	21,953	1,964	1,532	432	6.8	20.7	2.0
	200~299명	6,961	2,099	4,862	7,423	2,482	4,941	462	383	79	6.6	18.2	1.6
	100~199명	11,479	3,034	8,445	12,165	3,648	8,517	686	614	72	6.0	20.2	0.9
	50~99명	10,467	2,253	8,214	11,283	2,788	8,495	816	535	281	7.8	23.7	3.4
	5~49명	35,526	5,527	29,999	38,578	7,612	30,966	3,052	2,085	967	8.6	37.7	3.2
	4명 이하	10,333	1,967	8,366	10,817	2,560	8,257	484	593	-109	4.7	30.1	-1.3
비중	계[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	-	-	-
	300명 이상	61.8	70.4	58.8	60.7	67.9	57.7	-1.2	-2.5	-1.2	-	-	-
	50~299명	14.6	14.5	14.6	15.0	14.8	15.0	0.4	0.3	0.4	-	-	-
	200~299명	3.5	4.1	3.3	3.6	4.1	3.4	0.1	0.0	0.1	-	-	-
	100~199명	5.8	6.0	5.7	5.9	6.1	5.8	0.1	0.1	0.1	-	-	-
	50~99명	5.3	4.4	5.6	5.5	4.6	5.8	0.2	0.2	0.2	-	-	-
	5~49명	17.9	10.9	20.4	18.7	12.7	21.2	0.8	1.8	0.8	-	-	-
	4명 이하	5.2	3.9	5.7	5.2	4.3	5.7	0.0	0.4	0.0	-	-	-

주1) 기업체 규모 '미상' 포함

라. 산업별 전체 육아휴직자

부(父)는 제조업(22.3%), 모(母)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0.3%)에서 비중이 가장 높음

□ ’24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부(父)가 종사하고 있는 산업별 비중은 제조업이 22.3%로 가장 높았고,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9.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0.6%) 순임

○ 전년 대비 산업별 비중은 정보통신업(0.4%p),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0.3%p) 등에서 높아졌고,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1%p), 교육 서비스업(-0.4%p) 등에서 낮아졌음

□ ’24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모(母)가 종사하고 있는 산업별 비중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20.3%로 가장 높았고,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4.5%), 교육 서비스업(11.1%) 순임

○ 전년 대비 산업별 비중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0.8%p),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0.3%p) 등에서 높아졌고, 교육 서비스업(-0.8%p), 금융 및 보험업(-0.3%p) 등에서 낮아졌음

< 산업별 전체 육아휴직자 >

(단위: 명, %, %p)

		2023년			2024년p			증감			증감률		
		전체	부	모	전체	부	모	전체	부	모	전체	부	모
전체육아휴직자	계	198,218	50,815	147,403	206,226	60,117	146,109	8,008	9,302	-1,294	4.0	18.3	-0.9
	제조업	27,647	11,352	16,295	29,301	13,392	15,909	1,654	2,040	-386	6.0	18.0	-2.4
	건설업	4,048	1,604	2,444	4,509	2,076	2,433	461	472	-11	11.4	29.4	-0.5
	도매 및 소매업	16,528	3,886	12,642	17,072	4,699	12,373	544	813	-269	3.3	20.9	-2.1
	운수 및 창고업	6,087	2,651	3,436	6,354	3,036	3,318	267	385	-118	4.4	14.5	-3.4
	숙박 및 음식점업	2,961	740	2,221	3,269	926	2,343	308	186	122	10.4	25.1	5.5
	정보통신업	9,117	2,860	6,257	10,016	3,611	6,405	899	751	148	9.9	26.3	2.4
	금융 및 보험업	11,758	1,947	9,811	11,702	2,409	9,293	-56	462	-518	-0.5	23.7	-5.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9,336	5,256	14,080	20,804	6,389	14,415	1,468	1,133	335	7.6	21.6	2.4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	9,201	2,586	6,615	9,487	2,978	6,509	286	392	-106	3.1	15.2	-1.6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2,218	10,496	21,722	32,968	11,775	21,193	750	1,279	-529	2.3	12.2	-2.4
	교육 서비스업	20,222	2,632	17,590	19,128	2,899	16,229	-1,094	267	-1,361	-5.4	10.1	-7.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559	1,857	28,702	31,917	2,270	29,647	1,358	413	945	4.4	22.2	3.3
	기타[1)]	8,536	2,948	5,588	9,699	3,657	6,042	1,163	709	454	13.6	24.1	8.1
비중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	-	-	-
	제조업	13.9	22.3	11.1	14.2	22.3	10.9	0.3	-0.1	-0.2	-	-	-
	건설업	2.0	3.2	1.7	2.2	3.5	1.7	0.1	0.3	0.0	-	-	-
	도매 및 소매업	8.3	7.6	8.6	8.3	7.8	8.5	-0.1	0.2	-0.1	-	-	-
	운수 및 창고업	3.1	5.2	2.3	3.1	5.1	2.3	0.0	-0.2	-0.1	-	-	-
	숙박 및 음식점업	1.5	1.5	1.5	1.6	1.5	1.6	0.1	0.1	0.1	-	-	-
	정보통신업	4.6	5.6	4.2	4.9	6.0	4.4	0.3	0.4	0.1	-	-	-
	금융 및 보험업	5.9	3.8	6.7	5.7	4.0	6.4	-0.3	0.2	-0.3	-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8	10.3	9.6	10.1	10.6	9.9	0.3	0.3	0.3	-	-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	4.6	5.1	4.5	4.6	5.0	4.5	0.0	-0.1	0.0	-	-	-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6.3	20.7	14.7	16.0	19.6	14.5	-0.3	-1.1	-0.2	-	-	-
	교육 서비스업	10.2	5.2	11.9	9.3	4.8	11.1	-0.9	-0.4	-0.8	-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5.4	3.7	19.5	15.5	3.8	20.3	0.1	0.1	0.8	-	-	-
	기타[1)]	4.3	5.8	3.8	4.7	6.1	4.1	0.4	0.3	0.3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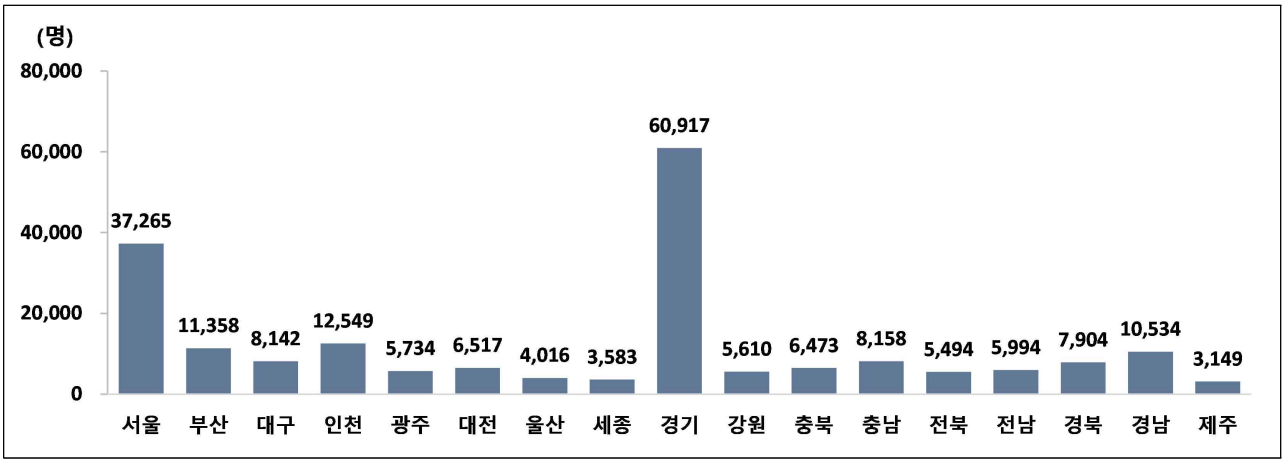
주1) 농림어업, 부동산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미상 등 포함

마. 시도별 전체 육아휴직자

'24년 시도별 전체 육아휴직자는 경기 60,917명, 서울 37,265명 순으로 많음

□ '24년 시도별 전체 육아휴직자는 경기 60,917명, 서울 37,265명 순으로 많았고, 제주 3,149명, 세종 3,583명 순으로 적었음

○ 전년 대비 인천(11.4%), 전남(7.7%) 등에서 증가한 반면, 세종(-1.9%)에서 감소하였음



< 시도별 전체 육아휴직자 >

(단위: 명, %)

	2023년			2024년p			증감			증감률		
	전체	부	모	전체	부	모	전체	부	모	전체	부	모
전국[1]	198,218	50,815	147,403	206,226	60,117	146,109	8,008	9,302	-1,294	4.0	18.3	-0.9
서울	36,707	8,129	28,578	37,265	9,566	27,699	558	1,437	-879	1.5	17.7	-3.1
부산	11,053	2,750	8,303	11,358	3,300	8,058	305	550	-245	2.8	20.0	-3.0
대구	7,752	1,895	5,857	8,142	2,245	5,897	390	350	40	5.0	18.5	0.7
인천	11,265	3,101	8,164	12,549	3,754	8,795	1,284	653	631	11.4	21.1	7.7
광주	5,600	1,373	4,227	5,734	1,686	4,048	134	313	-179	2.4	22.8	-4.2
대전	6,124	1,554	4,570	6,517	1,917	4,600	393	363	30	6.4	23.4	0.7
울산	4,001	1,118	2,883	4,016	1,257	2,759	15	139	-124	0.4	12.4	-4.3
세종	3,654	1,197	2,457	3,583	1,234	2,349	-71	37	-108	-1.9	3.1	-4.4
경기	58,296	14,351	43,945	60,917	17,346	43,571	2,621	2,995	-374	4.5	20.9	-0.9
강원	5,553	1,648	3,905	5,610	1,877	3,733	57	229	-172	1.0	13.9	-4.4
충북	6,059	1,644	4,415	6,473	2,014	4,459	414	370	44	6.8	22.5	1.0
충남	7,597	2,325	5,272	8,158	2,685	5,473	561	360	201	7.4	15.5	3.8
전북	5,356	1,406	3,950	5,494	1,646	3,848	138	240	-102	2.6	17.1	-2.6
전남	5,565	1,528	4,037	5,994	1,809	4,185	429	281	148	7.7	18.4	3.7
경북	7,461	2,128	5,333	7,904	2,524	5,380	443	396	47	5.9	18.6	0.9
경남	10,160	2,709	7,451	10,534	3,180	7,354	374	471	-97	3.7	17.4	-1.3
제주	3,035	997	2,038	3,149	1,131	2,018	114	134	-20	3.8	13.4	-1.0

주1) 부모의 거주지 기준이며 전국은 거주지 미연계자가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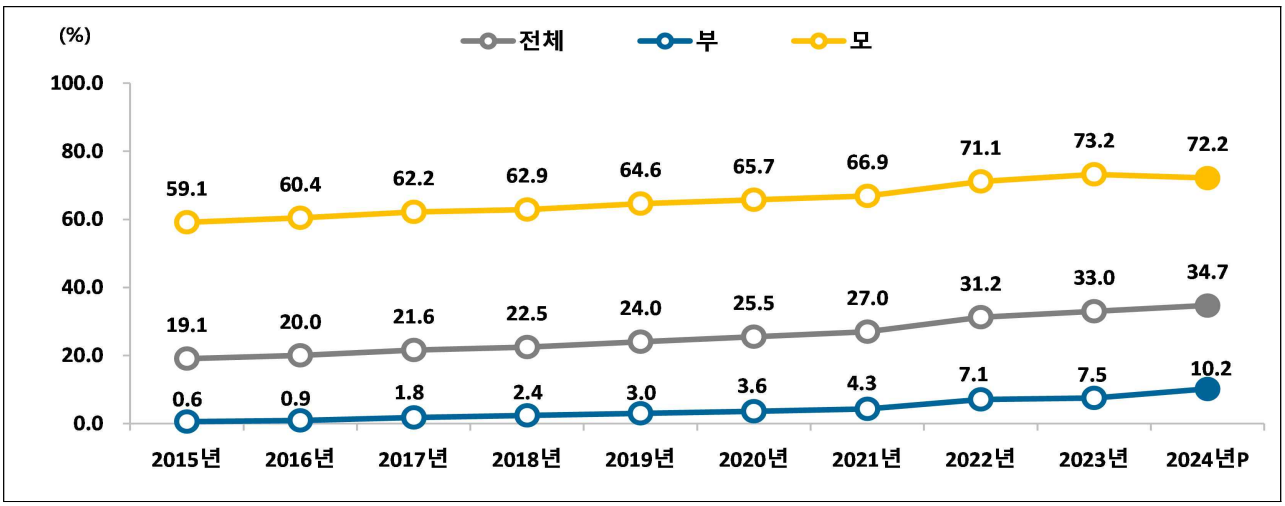
2. 출생아 부모의 출생연도 육아휴직

가. 육아휴직 추이

'24년 출생아 부모의 '24년 육아휴직 사용률은 34.7%로 전년 대비 1.7%p 상승함

□ '24년 출생아 부모의 '24년 육아휴직 사용률은 34.7%로 전년(33.0%)보다 1.7%p 상승하였음

○ '24년 부(父)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0.2%, 모(母)는 72.2%로, 전년 대비 부(父)는 2.7%p 상승한 반면, 모(母)는 1.0%p 하락하였음



<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추이 >

(단위: %, %p, 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p	전년 대비 증감	전년 대비 증감률
육아휴직 사용률[1]	전체	19.1	20.0	21.6	22.5	24.0	25.5	27.0	31.2	33.0	34.7	1.7	-
	부	0.6	0.9	1.8	2.4	3.0	3.6	4.3	7.1	7.5	10.2	2.7	-
	모	59.1	60.4	62.2	62.9	64.6	65.7	66.9	71.1	73.2	72.2	-1.0	-
육아휴직자	전체	78,395	77,089	73,962	75,227	76,136	74,275	77,391	88,118	88,268	96,810	8,542	9.7
	부	1,752	2,375	4,126	5,278	6,340	6,871	7,933	12,486	12,193	17,074	4,881	40.0
	모	76,643	74,714	69,836	69,949	69,796	67,404	69,458	75,632	76,075	79,736	3,661	4.8
육아휴직 대상자	전체	409,421	385,819	343,178	333,624	316,880	291,511	286,966	282,199	267,186	278,619	11,433	4.3
	부	279,698	262,125	230,910	222,335	208,795	188,882	183,144	175,865	163,228	168,202	4,974	3.0
	모	129,723	123,694	112,268	111,289	108,085	102,629	103,822	106,334	103,958	110,417	6,459	6.2
출생아 수		438,420	406,243	357,771	326,822	302,676	272,337	260,562	249,186	230,028	238,317	8,289	3.6

주1) 육아휴직 사용률=(육아휴직자/육아휴직 대상자)×100

□ ’24년 출생아 부모의 ’24년 육아휴직자는 9만 6,810명으로 전년 대비 8,542명(9.7%) 증가하였음

○ 육아휴직자 중 부(父)는 1만 7,074명으로 전년 대비 4,881명(40.0%) 증가하였고, 모(母)는 7만 9,736명으로 전년 대비 3,661명(4.8%)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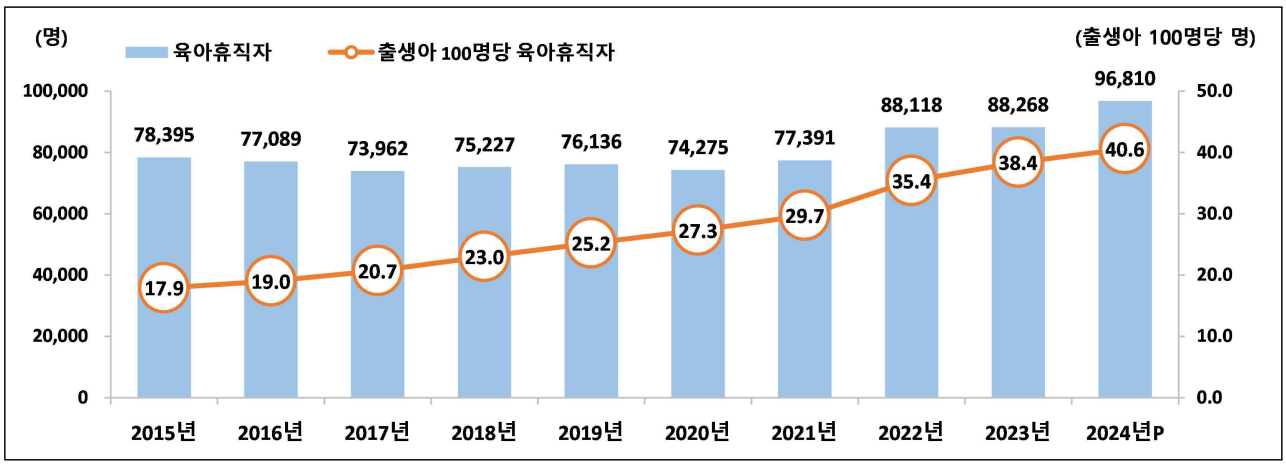
□ ’24년 출생아 부모의 ’24년 육아휴직 대상자*는 27만 8,619명으로 전년 대비 1만 1,433명(4.3%) 증가하였음

* 대상자 조건: 법률상 육아휴직 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 및 공무원(참고: 부록 57, 58쪽)

○ 육아휴직 대상자 중 부(父)는 16만 8,202명으로 전년 대비 4,974명(3.0%) 증가하였고, 모(母)는 11만 417명으로 전년 대비 6,459명(6.2%) 증가하였음

□ ’24년 출생아 부모 중 ’24년 육아휴직자는 출생아 100명당 40.6명으로 전년 대비 2.2명 증가하였음

○ 부(父)는 7.2명으로 전년 대비 1.9명 증가하였고, 모(母)는 33.5명으로 전년 대비 0.4명 증가하였음



< 출생아 부모 중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자 추이 >

(단위: 출생아 100명당 명, 명,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P	전년 대비 증감	전년 대비 증감률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A/B×100)	전체	17.9	19.0	20.7	23.0	25.2	27.3	29.7	35.4	38.4	40.6	2.2	-
	부	0.4	0.6	1.2	1.6	2.1	2.5	3.0	5.0	5.3	7.2	1.9	-
	모	17.5	18.4	19.5	21.4	23.1	24.8	26.7	30.4	33.1	33.5	0.4	-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A)	전체	78,395	77,089	73,962	75,227	76,136	74,275	77,391	88,118	88,268	96,810	8,542	9.7
	부	1,752	2,375	4,126	5,278	6,340	6,871	7,933	12,486	12,193	17,074	4,881	40.0
	모	76,643	74,714	69,836	69,949	69,796	67,404	69,458	75,632	76,075	79,736	3,661	4.8
	부&모[1]	774	1,108	2,110	2,706	3,644	4,828	5,844	13,060	13,196	20,662	7,466	56.6
출생아 수(B)		438,420	406,243	357,771	326,822	302,676	272,337	260,562	249,186	230,028	238,317	8,289	3.6

주1) 출생연도에 부와 모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임

나. 연령대별 육아휴직

육아휴직 사용률은 부(父)와 모(母) 모두 30세 미만에서 가장 높음

□ 육아휴직 사용률을 연령대별로 보면, 30세 미만에서 부(父), 모(母) 모두 각각 11.8%, 75.9%로 가장 높았음

○ 전년 대비 부(父)는 모든 연령대에서 상승하였고, 모(母)는 40세 이상(0.6%p)에서 상승하였음

□ 육아휴직자의 연령대별 비중은 전년 대비 30~34세(0.7%p), 35~39세(0.5%p)에서 높아졌고, 30세 미만(-1.2%p)에서 낮아졌음

○ 전년 대비 부(父)와 모(母)의 연령대별 비중은 30~34세에서 각각 1.1%p, 1.3%p로 가장 많이 높아졌음

□ 육아휴직 대상자의 연령대별 비중은 전년 대비 30~34세(1.0%p), 35~39세(0.3%p)에서 높아졌고, 30세 미만(-0.8%p), 40세 이상(-0.5%p)에서 낮아졌음

○ 전년 대비 부(父)와 모(母)의 연령대별 비중은 30~34세에서 각각 0.7%p, 1.3%p로 가장 많이 높아졌음

< 연령대별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

(단위: %, %p, 명)

		2023년			2024년p			증감		
		전체	부	모	전체	부	모	전체	부	모
육아휴직 사용률[1]	계	33.0	7.5	73.2	34.7	10.2	72.2	1.7	2.7	-1.0
	30세 미만	44.3	7.5	76.3	46.4	11.8	75.9	2.1	4.3	-0.4
	30~34세	39.8	8.0	75.7	41.4	11.0	74.6	1.6	3.0	-1.1
	35~39세	27.5	7.5	69.4	29.1	9.9	68.1	1.6	2.4	-1.3
	40세 이상	15.7	6.2	61.0	17.2	8.0	61.6	1.5	1.8	0.6
육아휴직자		88,268	12,193	76,075	96,810	17,074	79,736	8,542	4,881	3,661
비중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
	30세 미만	13.1	7.5	14.1	12.0	8.0	12.8	-1.2	0.5	-1.2
	30~34세	52.4	40.4	54.3	53.1	41.5	55.5	0.7	1.1	1.3
	35~39세	28.7	38.4	27.2	29.2	37.8	27.3	0.5	-0.6	0.2
	40세 이상	5.8	13.8	4.5	5.8	12.7	4.3	0.0	-1.1	-0.2
육아휴직 대상자		267,186	163,228	103,958	278,619	168,202	110,417	11,433	4,974	6,459
비중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
	30세 미만	9.8	7.5	13.5	9.0	6.9	12.2	-0.8	-0.6	-1.3
	30~34세	43.5	37.8	52.5	44.5	38.5	53.8	1.0	0.7	1.3
	35~39세	34.5	38.3	28.7	34.8	38.6	29.0	0.3	0.4	0.3
	40세 이상	12.2	16.5	5.4	11.7	16.0	5.0	-0.5	-0.5	-0.3

주1) 육아휴직 사용률=(육아휴직자/육아휴직 대상자)×100

다. 기업체 규모별 육아휴직

육아휴직 사용률은 부(父)는 300명 이상, 모(母)는 50~299명인 기업체 규모에서 가장 높음

□ 육아휴직 사용률을 기업체 규모별로 보면, 부(父)는 300명 이상 규모에서 12.5%, 모(母)는 50~299명 규모에서 79.9%로 가장 높았음

○ 전년 대비 부는 모든 규모에서 상승하였고, 모(母)는 4명 이하(1.2%p), 5~49명(0.7%p)에서 상승하였음

□ 육아휴직자의 기업체 규모별 비중은 전년 대비 300명 이상(-1.1%p)을 제외한 모든 규모에서 높아졌음

○ 전년 대비 부(父)와 모(母)의 기업체 규모별 비중은 5~49명에서 각각 1.3%p, 0.7%p로 가장 많이 높아졌음

□ 육아휴직 대상자의 기업체 규모별 비중은 300명 이상(0.1%p)에서 전년 대비 높아졌음

○ 전년 대비 부(父)의 기업체 규모별 비중은 300명 이상(0.6%p)에서 높아졌고, 모(母)의 기업체 규모별 비중은 300명 이상(-0.9%p)에서 낮아졌음

< 기업체 규모별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

(단위: %, %p, 명)

		2023년			2024년p			증감		
		전체	부	모	전체	부	모	전체	부	모
육아휴직 사용률[1]	계	33.0	7.5	73.2	34.7	10.2	72.2	1.7	2.7	-1.0
	300명 이상	37.6	9.6	79.8	38.7	12.5	78.4	1.2	2.9	-1.5
	50~299명	32.0	6.5	81.2	34.3	9.2	79.9	2.3	2.7	-1.3
	200~299명	32.0	7.3	82.0	33.8	10.4	80.8	1.8	3.1	-1.2
	100~199명	32.3	6.8	82.3	34.6	9.4	80.0	2.2	2.6	-2.3
	50~99명	31.7	5.6	79.8	34.4	8.1	79.2	2.8	2.5	-0.5
	5~49명	29.7	4.7	66.8	32.6	7.2	67.5	2.9	2.6	0.7
	4명 이하	18.0	4.0	39.8	20.7	6.2	41.0	2.7	2.1	1.2
육아휴직자		88,268	12,193	76,075	96,810	17,074	79,736	8,542	4,881	3,661
비중	계[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
	300명 이상	58.9	65.9	57.8	57.8	63.8	56.5	-1.1	-2.1	-1.3
	50~299명	15.9	15.4	16.0	16.1	15.7	16.2	0.2	0.3	0.2
	200~299명	3.7	4.1	3.6	3.7	4.3	3.6	0.0	0.2	-0.1
	100~199명	6.2	6.3	6.2	6.2	6.2	6.2	0.0	-0.1	0.0
	50~99명	6.0	5.0	6.2	6.2	5.2	6.4	0.2	0.2	0.2
	5~49명	19.9	13.6	20.9	20.5	14.9	21.6	0.5	1.3	0.7
	4명 이하	4.8	4.8	4.8	5.1	5.0	5.1	0.3	0.3	0.3
육아휴직 대상자		267,186	163,228	103,958	278,619	168,202	110,417	11,433	4,974	6,459
비중	계[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
	300명 이상	51.8	51.1	53.0	51.9	51.7	52.1	0.1	0.6	-0.9
	50~299명	16.4	17.7	14.4	16.3	17.4	14.6	-0.2	-0.4	0.2
	200~299명	3.8	4.2	3.2	3.8	4.2	3.2	0.0	0.0	-0.1
	100~199명	6.4	6.9	5.6	6.2	6.7	5.6	-0.1	-0.2	0.1
	50~99명	6.3	6.6	5.6	6.2	6.5	5.8	0.0	-0.1	0.2
	5~49명	22.2	21.7	22.9	21.8	21.0	23.2	-0.4	-0.8	0.2
	4명 이하	8.9	8.8	8.9	8.6	8.3	9.1	-0.3	-0.5	0.2

주1) 육아휴직 사용률=(육아휴직자/육아휴직 대상자)×100 주2) 기업체 규모 '미상' 포함

라. 산업별 육아휴직

육아휴직 사용률은 부(父)와 모(母) 모두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에서 가장 높음

□ 육아휴직 사용률을 산업별로 보면,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에서 부(父), 모(母) 모두 각각 16.1%, 81.1%로 가장 높았음

○ 전년 대비 부(父)는 모든 산업에서 상승하였고, 모(母)는 숙박 및 음식점업(1.2%p),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0.6%p)에서 상승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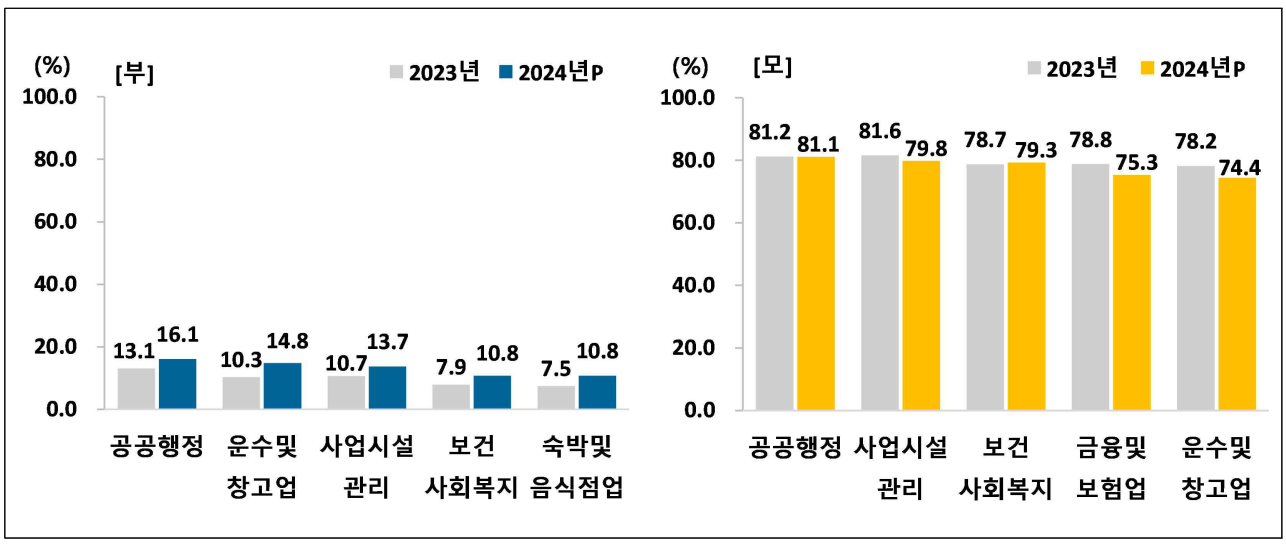
□ 육아휴직자의 산업별 비중은 전년 대비 제조업(0.3%p) 등에서 높아졌고, 교육서비스업(-0.7%p) 등에서 낮아졌음

○ 전년 대비 부(父)의 산업별 비중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0.6%p) 등에서 높아졌고,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3%p) 등에서 낮아졌으며, 모(母)의 산업별 비중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0.9%p) 등에서 높아졌고, 교육서비스업(-0.5%p) 등에서 낮아졌음

□ 육아휴직 대상자의 산업별 비중은 전년 대비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0.3%p) 등에서 높아졌고, 제조업(-0.4%p) 등에서는 낮아졌음

○ 전년 대비 부(父)의 산업별 비중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0.3%p) 등에서 높아졌고, 제조업(-0.4%p) 등에서 낮아졌으며, 모(母)의 산업별 비중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0.5%p) 등에서 높아졌고, 교육 서비스업(-0.6%p) 등에서 낮아졌음

< 산업별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5순위) >



< 산업별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

(단위: %, %p, 명)

		2023년			2024년p			증감		
		전체	부	모	전체	부	모	전체	부	모
육아휴직 사용률[1]	계	33.0	7.5	73.2	34.7	10.2	72.2	1.7	2.7	-1.0
	제조업	20.5	6.5	71.4	22.5	9.1	69.8	2.0	2.6	-1.6
	건설업	13.7	4.6	47.9	15.1	6.7	47.1	1.4	2.1	-0.8
	도매 및 소매업	27.1	5.6	64.5	29.3	7.8	64.0	2.2	2.2	-0.5
	운수 및 창고업	28.1	10.3	78.2	31.6	14.8	74.4	3.5	4.5	-3.8
	숙박 및 음식점업	25.8	7.9	50.3	29.3	10.8	51.5	3.5	2.9	1.2
	정보통신업	28.2	6.9	74.8	31.1	9.9	74.4	2.9	3.0	-0.4
	금융 및 보험업	39.0	4.9	78.8	39.2	7.6	75.3	0.2	2.7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1.6	7.2	74.6	33.2	10.1	73.0	1.6	2.9	-1.6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7.9	10.7	81.6	39.8	13.7	79.8	1.9	3.0	-1.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43.8	13.1	81.2	44.9	16.1	81.1	1.1	3.0	-0.1
	교육 서비스업	44.6	6.3	68.1	44.8	8.3	67.4	0.2	2.0	-0.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61.3	7.5	78.7	63.4	10.8	79.3	2.1	3.3	0.6
	기타[2]	25.6	7.9	64.3	25.1	9.4	60.4	-0.5	1.5	-3.9
육아휴직자		88,268	12,193	76,075	96,810	17,074	79,736	8,542	4,881	3,661
비중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
	제조업	12.8	23.1	11.1	13.1	23.4	10.9	0.3	0.3	-0.2
	건설업	1.9	3.8	1.7	1.9	3.9	1.5	0.0	0.1	-0.1
	도매 및 소매업	8.7	8.2	8.8	8.7	8.2	8.9	0.0	0.0	0.1
	운수 및 창고업	2.9	5.6	2.4	2.9	5.5	2.3	0.0	-0.2	-0.1
	숙박 및 음식점업	1.5	1.9	1.4	1.6	1.9	1.6	0.1	-0.1	0.2
	정보통신업	4.8	5.8	4.6	5.0	6.0	4.7	0.2	0.2	0.1
	금융 및 보험업	5.9	2.9	6.3	5.6	3.3	6.1	-0.3	0.4	-0.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6	11.3	10.5	10.8	11.9	10.6	0.2	0.6	0.1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4.4	5.5	4.2	4.3	5.1	4.1	-0.1	-0.5	-0.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5.1	17.9	14.6	14.7	16.6	14.2	-0.4	-1.3	-0.4
	교육 서비스업	8.9	3.4	9.7	8.1	3.3	9.2	-0.7	-0.2	-0.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8.4	4.0	20.7	18.5	4.2	21.6	0.2	0.2	0.9
	기타[2]	4.2	6.4	3.8	4.6	6.8	4.2	0.4	0.3	0.3
육아휴직 대상자		267,186	163,228	103,958	278,619	168,202	110,417	11,433	4,974	6,459
비중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
	제조업	20.6	26.5	11.4	20.2	26.1	11.3	-0.4	-0.4	-0.1
	건설업	4.7	6.1	2.5	4.5	5.9	2.3	-0.3	-0.2	-0.2
	도매 및 소매업	10.6	11.0	10.0	10.4	10.6	10.0	-0.2	-0.4	0.0
	운수 및 창고업	3.4	4.1	2.3	3.2	3.7	2.2	-0.2	-0.3	0.0
	숙박 및 음식점업	1.9	1.8	2.1	2.0	1.8	2.2	0.0	-0.1	0.1
	정보통신업	5.6	6.3	4.5	5.6	6.2	4.6	-0.1	-0.1	0.1
	금융 및 보험업	5.0	4.4	5.9	4.9	4.4	5.8	0.0	0.0	-0.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1	11.6	10.3	11.3	11.9	10.5	0.2	0.3	0.2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8	3.9	3.8	3.8	3.8	3.7	-0.1	-0.1	0.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1.4	10.2	13.2	11.3	10.5	12.7	0.0	0.2	-0.5
	교육 서비스업	6.6	4.1	10.4	6.3	4.0	9.8	-0.2	-0.1	-0.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9.9	4.0	19.2	10.2	3.9	19.7	0.3	0.0	0.5
	기타[2]	5.4	6.1	4.4	6.4	7.3	5.0	1.0	1.2	0.6

주1) 육아휴직 사용률=(육아휴직자/육아휴직 대상자)×100
주2) 농림어업, 부동산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미상 등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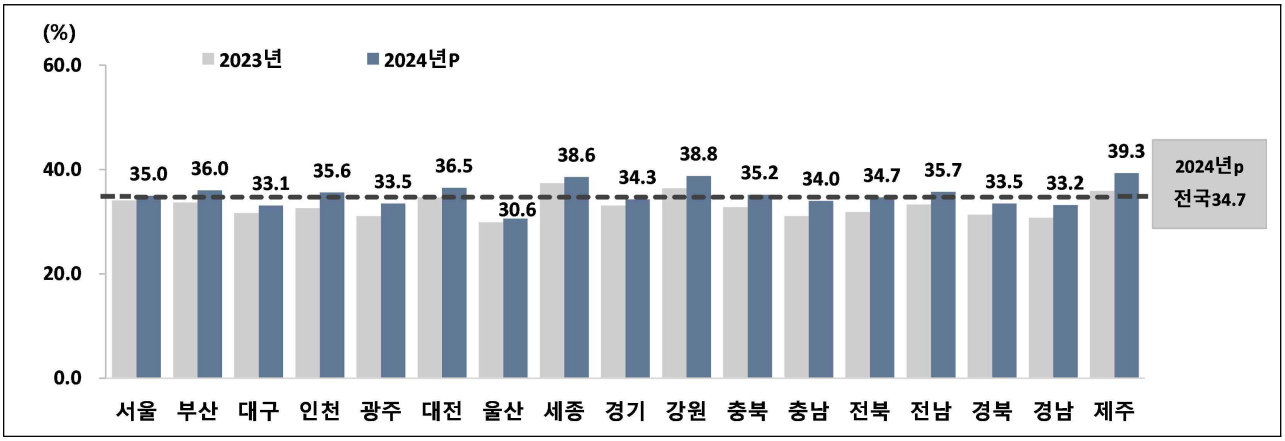
마. 시도별 육아휴직

시도별 육아휴직 사용률은 제주 39.3%, 강원 38.8%, 세종 38.6% 순으로 높음

□ 시도별 육아휴직 사용률은 제주 39.3%, 강원 38.8%, 세종 38.6% 순으로 높았고, 울산 30.6%, 대구 33.1% 순으로 낮았음

□ 시도별 육아휴직자 비중은 경기(29.7%), 서울(18.6%) 순으로 높았고, 제주(1.4%), 세종(1.6%) 순으로 낮았음

□ 시도별 육아휴직 대상자 비중은 경기(30.0%), 서울(18.5%) 순으로 높았고, 제주(1.3%), 세종(1.4%) 순으로 낮았음



< 시도별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

(단위: %, %p)

	2023년			2024년p			증감		
	전체	부	모	전체	부	모	전체	부	모
전국	33.0	7.5	73.2	34.7	10.2	72.2	1.7	2.7	-1.0
서울	34.1	6.8	71.2	35.0	8.8	69.4	0.9	2.0	-1.8
부산	33.7	7.1	74.5	36.0	10.5	73.6	2.3	3.4	-0.9
대구	31.7	6.5	73.2	33.1	8.4	72.2	1.4	1.9	-1.0
인천	32.6	8.1	73.0	35.6	10.9	74.2	3.0	2.8	1.2
광주	31.1	6.4	70.5	33.5	9.8	70.7	2.3	3.3	0.2
대전	34.7	8.2	74.5	36.5	11.7	72.8	1.8	3.5	-1.8
울산	29.9	6.6	77.0	30.6	8.1	75.5	0.7	1.5	-1.4
세종	37.4	11.7	75.3	38.6	13.8	74.7	1.2	2.2	-0.5
경기	33.1	7.3	74.0	34.3	9.9	72.1	1.2	2.6	-1.9
강원	36.4	10.3	74.0	38.8	14.4	73.6	2.4	4.1	-0.3
충북	32.8	8.1	75.1	35.2	11.6	74.4	2.4	3.5	-0.7
충남	31.1	8.5	73.6	34.0	11.3	74.4	2.8	2.8	0.8
전북	31.9	7.3	70.8	34.7	10.2	73.4	2.8	2.9	2.6
전남	33.3	8.7	73.6	35.7	11.8	72.7	2.4	3.1	-0.9
경북	31.4	7.3	73.9	33.5	10.4	73.4	2.1	3.1	-0.5
경남	30.8	6.7	72.7	33.2	9.2	73.4	2.4	2.6	0.7
제주	35.9	11.3	71.4	39.3	15.5	73.7	3.4	4.3	2.2

< 시도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및 육아휴직 대상자 비중 >

(단위: 명, %, %p)

		2023년			2024년p			증감		
		전체	부	모	전체	부	모	전체	부	모
육아휴직자		88,268	12,193	76,075	96,810	17,074	79,736	8,542	4,881	3,661
비중	전국[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
	서울	19.3	16.1	19.8	18.6	15.2	19.4	-0.6	-0.9	-0.4
	부산	5.8	5.3	5.8	5.7	5.6	5.7	-0.1	0.3	-0.1
	대구	3.9	3.6	4.0	4.0	3.6	4.1	0.1	-0.1	0.1
	인천	5.6	6.3	5.5	6.3	6.6	6.2	0.7	0.4	0.7
	광주	2.7	2.5	2.7	2.6	2.7	2.6	-0.1	0.2	-0.1
	대전	3.3	3.4	3.3	3.3	3.5	3.2	-0.1	0.1	-0.1
	울산	2.0	2.1	2.0	2.0	2.0	2.0	0.0	-0.2	0.0
	세종	1.6	2.2	1.5	1.6	1.9	1.5	0.0	-0.3	0.0
	경기	29.9	29.2	30.0	29.7	29.4	29.8	-0.2	0.2	-0.3
	강원	2.8	3.3	2.7	2.7	3.4	2.6	0.0	0.0	-0.1
	충북	3.2	3.6	3.1	3.2	3.7	3.1	0.0	0.1	0.0
	충남	3.7	4.8	3.6	3.9	4.7	3.7	0.2	-0.1	0.2
	전북	2.7	2.7	2.7	2.7	2.8	2.7	0.1	0.1	0.1
	전남	3.0	3.6	3.0	3.2	3.6	3.1	0.1	0.0	0.1
	경북	3.7	4.0	3.7	3.8	4.2	3.7	0.1	0.2	0.0
	경남	5.0	5.0	5.0	5.0	4.9	5.0	0.0	0.0	0.0
	제주	1.5	2.0	1.4	1.4	1.9	1.3	0.0	-0.1	-0.1
육아휴직 대상자		267,186	163,228	103,958	278,619	168,202	110,417	11,433	4,974	6,459
비중	전국[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
	서울	18.6	17.6	20.3	18.5	17.4	20.2	-0.1	-0.1	-0.2
	부산	5.6	5.6	5.7	5.5	5.4	5.6	-0.2	-0.2	-0.1
	대구	4.1	4.2	4.0	4.2	4.3	4.1	0.1	0.1	0.1
	인천	5.7	5.8	5.5	6.1	6.2	6.1	0.4	0.4	0.5
	광주	2.9	2.9	2.8	2.7	2.8	2.7	-0.1	-0.1	-0.2
	대전	3.2	3.1	3.2	3.1	3.1	3.2	0.0	0.0	-0.1
	울산	2.2	2.4	1.9	2.2	2.5	1.9	0.0	0.0	0.0
	세종	1.4	1.4	1.5	1.4	1.4	1.5	0.0	0.0	0.0
	경기	29.8	29.9	29.7	30.0	30.2	29.8	0.2	0.3	0.1
	강원	2.5	2.4	2.6	2.4	2.4	2.5	-0.1	-0.1	-0.1
	충북	3.2	3.3	3.0	3.2	3.3	3.0	-0.1	-0.1	0.0
	충남	4.0	4.2	3.5	4.0	4.2	3.6	0.0	0.0	0.1
	전북	2.8	2.8	2.8	2.7	2.8	2.7	0.0	0.0	-0.1
	전남	3.0	3.1	2.9	3.1	3.1	3.0	0.1	0.0	0.1
	경북	3.9	4.1	3.7	3.9	4.1	3.7	0.0	0.0	0.0
	경남	5.4	5.6	5.1	5.2	5.4	4.9	-0.1	-0.2	-0.1
	제주	1.3	1.3	1.4	1.3	1.2	1.3	-0.1	-0.1	-0.1

주1) 출생아 부모의 거주지 기준이며 전국은 거주지 미연계자가 포함됨

참고지표 | 출생아 부모의 12개월 이내(0세아) 육아휴직

◇ '23년 출생아 부모의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률은 43.7%로 전년 대비 3.0%p 상승하였음

* '23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여 '24년까지 육아휴직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23년 출산 후 12개월 이내)

< 출생아 부모의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률 >

(단위: %, %p)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p	전년 대비 증감
육아휴직 사용률	전체	23.4	24.9	27.7	29.0	31.3	33.7	36.8	40.7	43.7	3.0
	부	1.1	1.7	3.4	4.4	5.9	7.3	10.2	13.5	16.1	2.6
	모	68.5	71.3	74.7	75.4	77.4	79.5	80.9	83.0	84.5	1.5

<육아휴직 사용률(참고지표 vs 본지표) 비교 >

(단위: %, %p)

	출생아 부모의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률(참고지표)			출생아 부모의 출생연도 육아휴직 사용률(본지표)			차이 (A-B)
	전체(A)	부	모	전체(B)	부	모	
2015년	23.4	1.1	68.5	19.1	0.6	59.1	**4.3**
2016년	24.9	1.7	71.3	20.0	0.9	60.4	**4.9**
2017년	27.7	3.4	74.7	21.6	1.8	62.2	**6.1**
2018년	29.0	4.4	75.4	22.5	2.4	62.9	**6.5**
2019년	31.3	5.9	77.4	24.0	3.0	64.6	**7.3**
2020년	33.7	7.3	79.5	25.5	3.6	65.7	**8.2**
2021년	36.8	10.2	80.9	27.0	4.3	66.9	**9.8**
2022년	40.7	13.5	83.0	31.2	7.1	71.1	**9.5**
2023년	43.7	16.1	84.5	33.0	7.5	73.2	**10.7**

* 2023년 출생아 부모의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률은 잠정수치임

◇ (연령대별) '23년 출생아 부모의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률은 부(父)와 모(母) 모두 30~34세에서 가장 높았고, 모든 연령대에서 전년 대비 상승하였음

< 연령대별 출생아 부모의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률 >

(단위: %, %p)

		2022년			2023년p			증감		
		전체	부	모	전체	부	모	전체	부	모
육아휴직 사용률	계	40.7	13.5	83.0	43.7	16.1	84.5	3.0	2.6	1.5
	30세 미만	50.3	12.0	82.8	53.1	14.7	84.2	2.8	2.7	1.4
	30~34세	47.7	13.8	85.7	50.9	16.7	87.1	3.2	2.9	1.4
	35~39세	35.1	14.2	80.1	38.6	16.7	82.1	3.5	2.5	2.0
	40세 이상	22.0	11.7	71.9	24.4	13.7	73.0	2.5	2.0	1.1

◇ (기업체 규모별) '23년 출생아 부모의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률은 부(父)와 모(母) 모두 300명 이상 기업체 규모에서 가장 높았고, 모든 규모에서 전년 대비 상승하였음

< 기업체 규모별 출생아 부모의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률 >

(단위: %, %p)

		2022년			2023년p			증감		
		전체	부	모	전체	부	모	전체	부	모
육아휴직 사용률	계	40.7	13.5	83.0	43.7	16.1	84.5	3.0	2.6	1.5
	300명 이상	48.0	18.0	92.8	50.4	20.8	93.1	2.5	2.8	0.3
	50~299명	38.0	10.9	89.9	41.3	13.4	90.9	3.3	2.5	1.0
	200~299명	38.5	12.2	91.9	42.1	15.0	92.7	3.6	2.8	0.9
	100~199명	39.1	11.5	91.2	41.7	14.0	91.4	2.6	2.5	0.2
	50~99명	36.6	9.4	87.3	40.3	11.6	89.4	3.7	2.2	2.1
	5~49명	33.2	7.9	72.1	37.7	10.1	75.8	4.5	2.2	3.7
	4명 이하	23.1	7.2	45.9	25.3	8.8	49.5	2.3	1.6	3.6

◇ (산업별) 산업별 '23년 출생아 부모의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률은 부(父)와 모(母) 모두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에서 가장 높았고, 모든 산업에서 전년 대비 상승하였음

< 산업별 출생아 부모의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률>

(단위: %, %p)

		2022년			2023년p			증감		
		전체	부	모	전체	부	모	전체	부	모
육아휴직 사용률	계	40.7	13.5	83.0	43.7	16.1	84.5	3.0	2.6	1.5
	제조업	25.2	10.2	79.9	28.9	13.2	81.7	3.6	3.0	1.7
	건설업	18.1	8.0	55.7	20.9	9.8	59.8	2.9	1.9	4.1
	도매 및 소매업	32.7	10.5	71.3	35.7	11.8	74.1	2.9	1.2	2.7
	운수 및 창고업	36.7	16.9	85.4	38.9	19.7	88.3	2.1	2.8	2.9
	숙박 및 음식점업	31.2	13.8	54.2	34.2	14.9	59.0	2.9	1.1	4.8
	정보통신업	35.5	12.2	86.5	38.7	14.8	86.9	3.3	2.7	0.4
	금융 및 보험업	50.2	10.1	93.0	50.6	11.3	93.3	0.3	1.2	0.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0.2	13.6	84.1	41.8	14.9	85.7	1.7	1.4	1.5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45.4	17.3	86.6	47.6	20.0	88.6	2.2	2.6	2.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58.5	28.1	96.1	60.7	31.5	96.0	2.2	3.4	0.0
	교육 서비스업	58.6	17.4	83.2	59.9	19.1	84.0	1.3	1.7	0.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68.6	12.9	86.3	71.1	16.2	87.6	2.5	3.3	1.3
	기타	31.6	13.2	72.4	35.8	16.5	75.0	4.2	3.3	2.6

◇ (시도별) 시도별 '23년 출생아 부모의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률은 세종 51.5%, 제주 49.0%, 강원 48.4% 순으로 높았으며, 모든 시도에서 전년 대비 상승하였음

< 시도별 출생아 부모의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률 >

(단위: %, %p)

	2022년			2023년p			증감		
	전체	부	모	전체	부	모	전체	부	모
전국	40.7	13.5	83.0	43.7	16.1	84.5	3.0	2.6	1.5
서울	42.9	13.2	81.9	45.3	15.3	83.0	2.4	2.2	1.1
부산	40.8	13.3	82.3	44.0	15.4	85.0	3.1	2.1	2.7
대구	38.3	11.5	81.1	41.1	13.4	83.9	2.8	2.0	2.8
인천	40.4	14.3	82.7	43.2	16.9	83.6	2.7	2.5	0.9
광주	42.1	14.3	82.4	42.5	15.3	83.1	0.4	1.0	0.7
대전	42.8	14.7	84.9	45.2	16.4	86.0	2.3	1.6	1.0
울산	35.8	11.2	86.4	39.4	14.2	87.2	3.6	3.0	0.8
세종	48.0	21.5	87.4	51.5	24.7	89.4	3.6	3.2	2.0
경기	40.0	12.9	82.8	43.6	15.7	85.0	3.6	2.9	2.2
강원	45.3	18.2	84.0	48.4	21.7	84.9	3.2	3.5	0.9
충북	39.2	13.1	84.8	43.2	16.6	86.5	4.0	3.5	1.6
충남	39.0	13.9	85.7	41.6	17.0	85.2	2.6	3.2	-0.6
전북	40.4	13.7	82.8	42.6	15.7	82.9	2.2	2.0	0.1
전남	40.3	15.1	82.4	44.2	17.9	85.3	4.0	2.9	3.0
경북	38.1	12.6	84.8	42.0	15.8	85.7	3.8	3.1	1.0
경남	38.3	12.9	83.5	41.2	15.0	84.4	2.8	2.1	0.9
제주	47.0	19.8	86.0	49.0	23.7	84.1	2.0	3.8	-1.9

3. 1자녀 부모 육아휴직 사용 현황 (전 기간 2015~2024년)

가. 자녀 연령별 육아휴직 사용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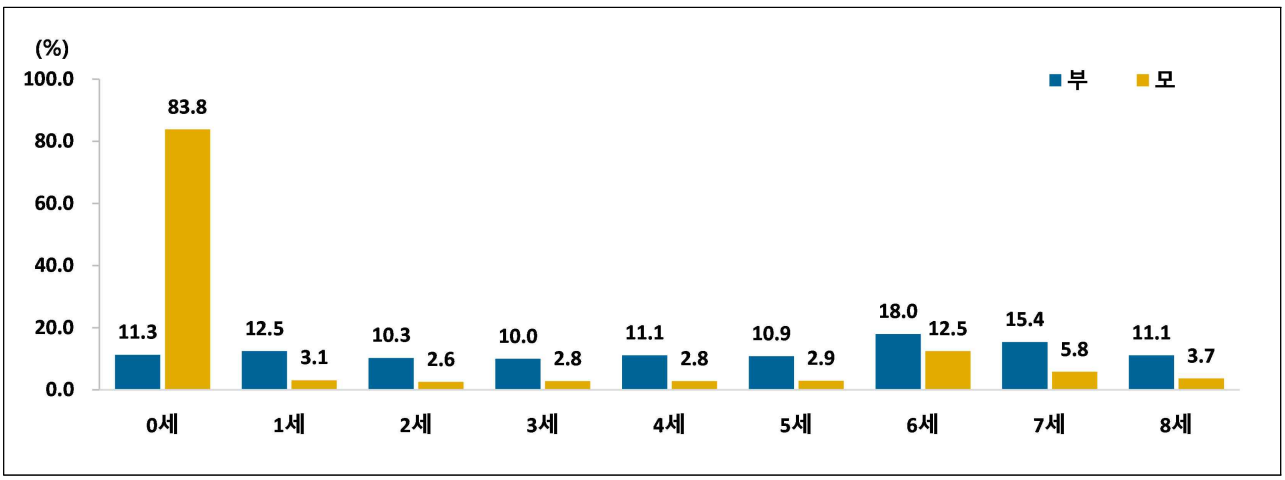
모(母)는 0세(83.8%) 때, 부(父)는 6세(18.0%) 때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가장 높았음

□ '15년 출생아의 1자녀 부모*를 대상으로 전 기간(0세~8세) 육아휴직 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부(父)는 자녀가 6세 때, 모(母)는 0세 때 가장 높았음

* '15~'24년까지 '15년 출생아만 있는 1자녀 부모 중 육아휴직을 한 번 이상 사용한 부모

○ 부(父)는 자녀가 6세(18.0%), 7세(15.4%) 때 순으로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높았음

○ 모(母)는 자녀가 0세(83.8%), 6세(12.5%) 때 순으로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높았음



< 1자녀 부모의 자녀 연령별 육아휴직 사용 비율 >

(단위: %, %p)

출생연도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2013년	전체	72.8	4.8	3.8	3.4	3.5	3.9	12.7	7.4	5.1
	부	12.0	9.9	7.6	8.5	9.5	10.3	19.0	17.2	15.0
	모	83.2	4.0	3.1	2.6	2.5	2.8	11.6	5.7	3.4
2014년	전체	71.2	5.0	3.7	3.8	3.8	4.6	12.8	7.8	5.3
	부	10.5	11.5	8.8	9.2	10.0	11.5	17.5	17.9	13.2
	모	83.5	3.6	2.7	2.7	2.6	3.2	11.8	5.8	3.7
2015년P	전체	70.1	4.9	4.1	4.2	4.4	4.4	13.5	7.6	5.1
	부	11.3	12.5	10.3	10.0	11.1	10.9	18.0	15.4	11.1
	모	83.8	3.1	2.6	2.8	2.8	2.9	12.5	5.8	3.7
전년 대비 증감	전체	-1.1	-0.1	0.4	0.4	0.6	-0.2	0.7	-0.2	-0.2
	부	0.8	1.0	1.5	0.8	1.1	-0.6	0.5	-2.5	-2.1
	모	0.3	-0.5	-0.1	0.1	0.2	-0.3	0.7	0.0	0.0

* 육아휴직을 분할사용한 경우 각 휴직 당시 자녀의 연령으로 중복 집계하여 전체 합이 100.0 이상임에 유의

나. 육아휴직 사용횟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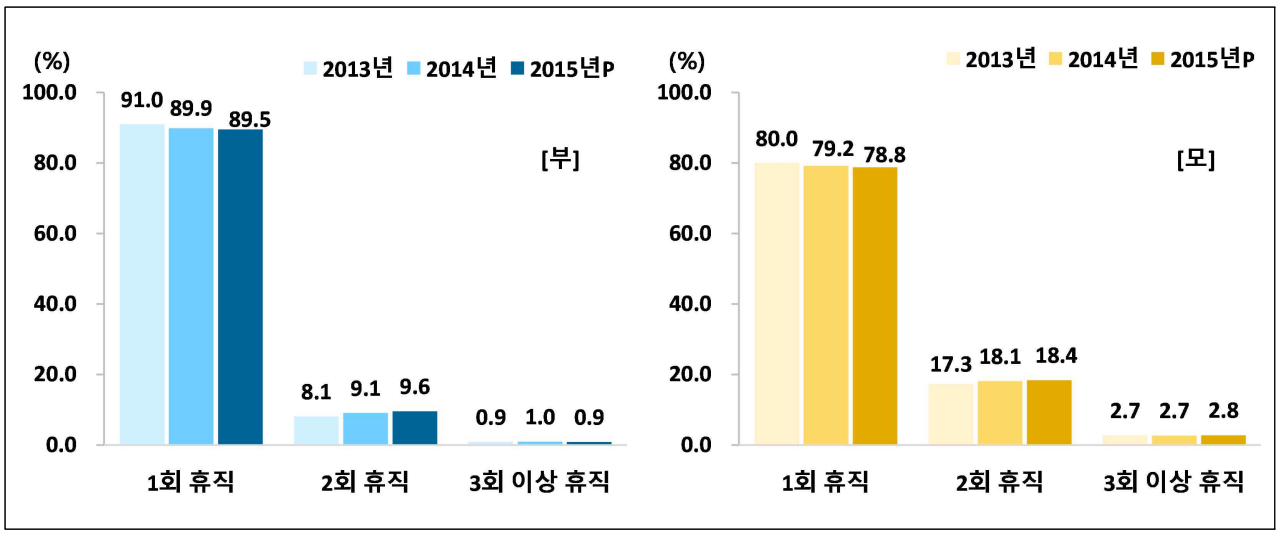
육아휴직을 2회 이상 사용한 부(父)는 10.5%, 모(母)는 21.2%임

□ '15년 출생아의 1자녀 부모* 육아휴직 사용횟수 현황을 살펴보면, 1회 육아휴직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 '15~'24년까지 '15년 출생아만 있는 1자녀 부모 중 육아휴직을 한 번 이상 사용한 부모

○ 부(父)는 1회 휴직 89.5%, 2회 휴직 9.6%, 3회 이상 휴직이 0.9%임

○ 모(母)는 1회 휴직 78.8%, 2회 휴직 18.4%, 3회 이상 휴직이 2.8%임



< 1자녀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횟수 비율(전 기간) >

(단위: %, %p)

	2013년~2022년			2014년~2023년			2015년~2024년P			전년 대비 증감		
	전체	부	모	전체	부	모	전체	부	모	전체	부	모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
1회 휴직	81.6	91.0	80.0	81.0	89.9	79.2	80.8	89.5	78.8	-0.2	-0.4	-0.4
2회 휴직	16.0	8.1	17.3	16.6	9.1	18.1	16.7	9.6	18.4	0.1	0.5	0.3
3회 이상 휴직	2.4	0.9	2.7	2.4	1.0	2.7	2.5	0.9	2.8	0.1	-0.1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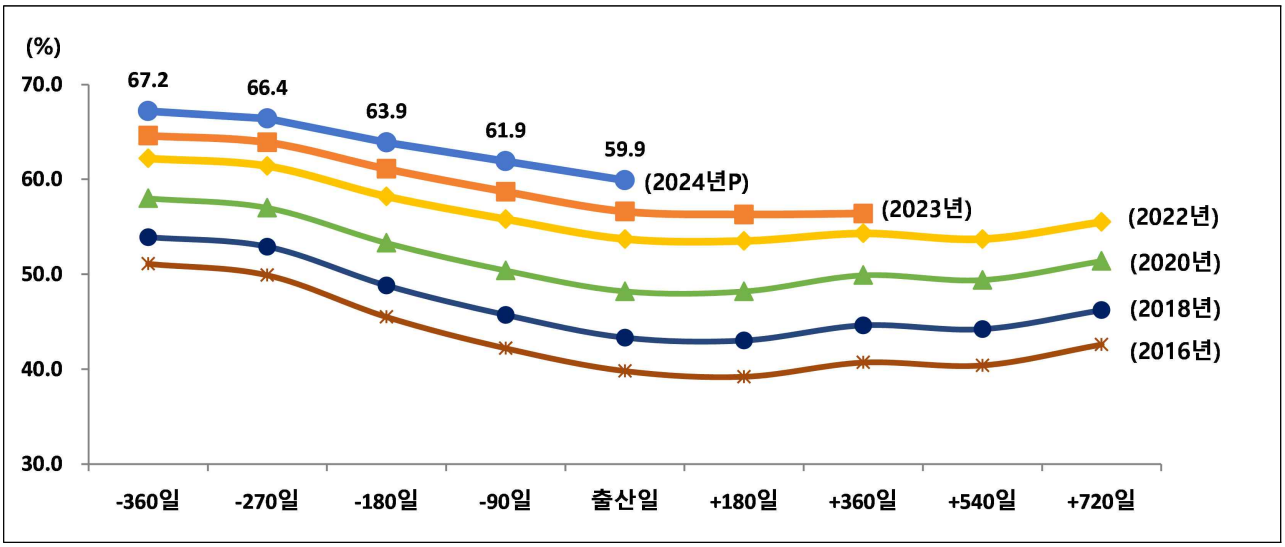
4. 출산 전·후 모(母)의 취업 비율

'24년 출산 모(母)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59.9%가 취업자였고, 취업 비율은 출산 360일 전(67.2%)보다 7.3%p 낮음

□ '24년 출산 모(母)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59.9%가 취업자였고, 출산 360일 전(67.2%)보다 취업 비율이 7.3%p 낮아졌음

○ 전년 대비 출산 모(母)의 출산일 기준 취업 비율은 3.3%p 높아졌음

□ 출산 모(母)의 출산 전·후 취업 비율의 추세를 살펴보면, 출산 전 360일부터 출산일까지 낮아지다가, 출산 후 등락을 보이며 540일 이후에는 증가세를 보였음



< 출산 전·후 모(母)의 취업 비율 >

(단위: %, %p)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P	전년 대비 증감
출산전	360일 전	51.1	52.2	53.9	55.6	58.0	60.2	62.2	64.6	67.2	2.6
	270일 전	49.9	51.2	52.9	54.6	57.0	59.4	61.4	63.9	66.4	2.5
	180일 전	45.5	47.0	48.8	50.7	53.3	55.9	58.2	61.1	63.9	2.8
	90일 전	42.2	43.7	45.7	47.7	50.4	53.3	55.8	58.7	61.9	3.2
출산일		39.8	41.4	43.3	45.5	48.2	51.3	53.7	56.6	59.9	3.3
출산후	180일 후	39.2	40.9	43.0	45.2	48.2	51.3	53.5	56.3	-	-
	360일 후	40.7	42.4	44.6	46.7	49.9	52.9	54.3	56.4	-	-
	540일 후	40.4	42.2	44.2	46.0	49.4	52.4	53.7	-	-	-
	720일 후	42.6	44.5	46.2	48.5	51.4	53.7	55.5	-	-	-

5. 출산휴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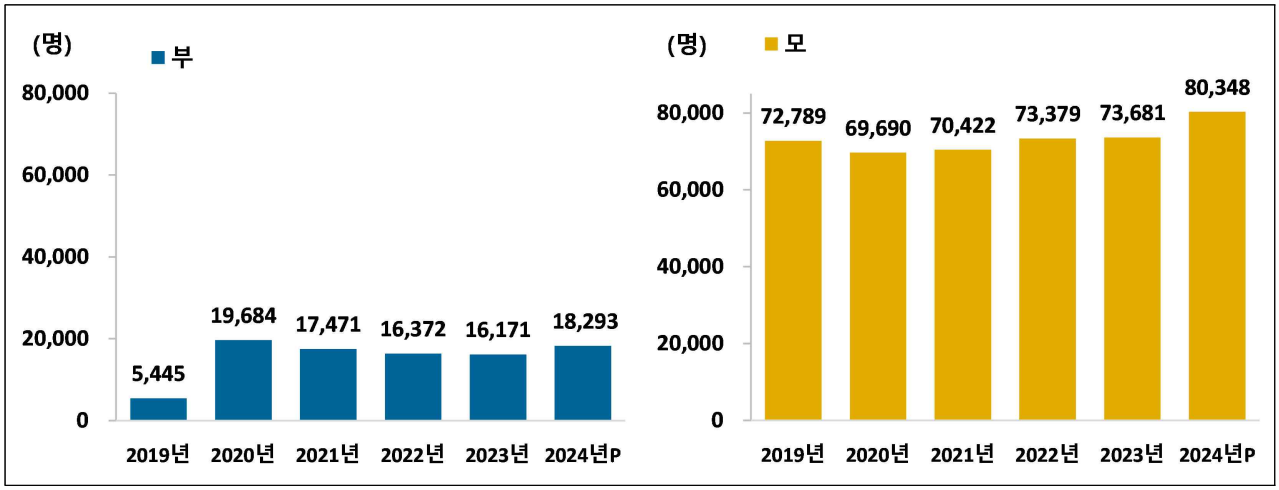
가. 출산휴가자 추이

'24년 출산휴가자는 부(父)와 모(母) 모두 전년 대비 증가

□ '24년 출생아 부모 중 출산휴가자 모(母)는 8만 348명으로 전년 7만 3,681명보다 6,667명(9.0%) 증가하였음

□ '24년 출생아 부모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부(父)*는 1만 8,293명으로 전년 1만 6,171명보다 2,122명(13.1%) 증가하였음

* 고용보험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부(父)이며 자주 하는 질문(64쪽) 참조



< 출산휴가자 규모 >

(단위: 명, %)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P	전년 대비	
								증감	증감률
출산 휴가자	부	5,445*	19,684	17,471	16,372	16,171	18,293	2,122	13.1
	모	72,789	69,690	70,422	73,379	73,681	80,348	6,667	9.0

* 고용보험 배우자 출산휴가(5일) 급여 지급 시행('19.10.1.) 시점부터 집계

※ 출산휴가자는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 수급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함에 따라 공무원, 교직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해석에 유의 바람

-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父)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이 아닌 배우자**는 **집계에서 제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및 우선지원 대상기업

나. 연령대별 출산휴가자

부(父)는 35~39세(39.1%), 모(母)는 30~34세(53.4%)에서 비중이 가장 높음

□ ’24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부(父)*의 연령대별 비중은 35~39세가 39.1%로 가장 높았고, 30~34세(37.6%), 40세 이상(16.0%), 30세 미만(7.3%) 순임

* 고용보험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배우자 출산휴가에 한하여 지원함에 유의

○ 전년 대비 연령대별 비중은 35~39세(0.8%p)에서 높아졌고, 30~34세(-0.4%p), 30세 미만(-0.4%p)에서 낮아졌음

□ ’24년 출산휴가자 중 모(母)의 연령대별 비중은 30~34세가 53.4%로 가장 높았고, 35~39세(28.4%), 30세 미만(13.3%), 40세 이상(4.9%) 순임

○ 전년 대비 연령대별 비중은 30~34세(1.4%p), 35~39세(0.3%p)에서 높아졌고, 30세 미만(-1.3%p), 40세 이상(-0.4%p)에서 낮아졌음

< 연령대별 출산휴가자 비중 >



< 연령대별 출산휴가자 >

(단위: 명, %, %p)

		2023년		2024년P		증감		증감률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출산휴가자	계	16,171	73,681	18,293	80,348	2,122	6,667	13.1	9.0
	30세 미만	1,255	10,757	1,340	10,665	85	-92	6.8	-0.9
	30~34세	6,150	38,320	6,885	42,931	735	4,611	12.0	12.0
	35~39세	6,189	20,692	7,144	22,816	955	2,124	15.4	10.3
	40세 이상	2,577	3,912	2,924	3,936	347	24	13.5	0.6
비중	계	100.0	100.0	100.0	100.0	-	-	-	-
	30세 미만	7.8	14.6	7.3	13.3	-0.4	-1.3	-	-
	30~34세	38.0	52.0	37.6	53.4	-0.4	1.4	-	-
	35~39세	38.3	28.1	39.1	28.4	0.8	0.3	-	-
	40세 이상	15.9	5.3	16.0	4.9	0.0	-0.4	-	-

다. 기업체 규모별 출산휴가자

부(父)는 50~299명(44.2%), 모(母)는 300명 이상(41.3%)에서 비중이 가장 높음

□ '24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부(父)*는 기업체 규모 50~299명이 44.2%로 가장 높았고, 5~49명(34.3%), 300명 이상(16.6%), 4명 이하(3.5%)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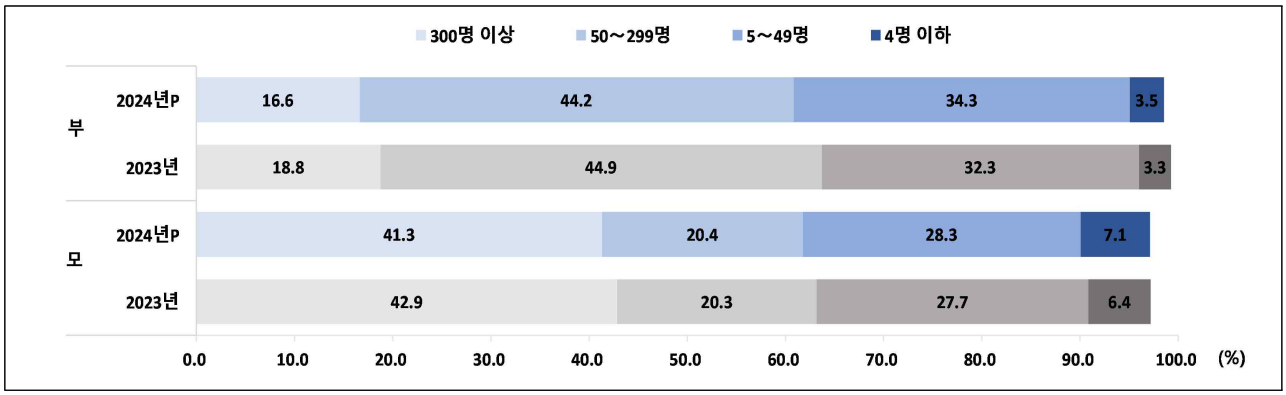
* 고용보험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배우자 출산휴가에 한하여 지원함에 유의

○ 전년 대비 기업체 규모별 비중은 5~49명(2.0%p), 4명 이하(0.2%p)에서 높아졌고, 300명 이상(-2.1%p), 50~299명(-0.8%p)에서 낮아졌음

□ '24년 출산휴가자 중 모(母)는 기업체 규모 300명 이상이 41.3%로 가장 높았고, 5~49명(28.3%), 50~299명(20.4%), 4명 이하(7.1%) 순임

○ 전년 대비 기업체 규모별 비중은 4명 이하(0.7%p), 5~49명(0.6%p), 50~299명(0.1%p)에서 높아졌고, 300명 이상(-1.5%p)에서 낮아졌음

< 기업체 규모별 출산휴가자 비중 >



< 기업체 규모별 출산휴가자 >

(단위: 명, %, %p)

		2023년		2024년P		증감		증감률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출산휴가자	계[1]	16,171	73,681	18,293	80,348	2,122	6,667	13.1	9.0
	300명 이상	3,033	31,573	3,042	33,190	9	1,617	0.3	5.1
	50~299명	7,267	14,963	8,082	16,427	815	1,464	11.2	9.8
	200~299명	1,792	3,399	1,922	3,552	130	153	7.3	4.5
	100~199명	2,910	5,708	3,167	6,278	257	570	8.8	10.0
	50~99명	2,565	5,856	2,993	6,597	428	741	16.7	12.7
	5~49명	5,224	20,398	6,267	22,739	1,043	2,341	20.0	11.5
	4명 이하	530	4,684	636	5,686	106	1,002	20.0	21.4
비중	계[1]	100.0	100.0	100.0	100.0	-	-	-	-
	300명 이상	18.8	42.9	16.6	41.3	-2.1	-1.5	-	-
	50~299명	44.9	20.3	44.2	20.4	-0.8	0.1	-	-
	200~299명	11.1	4.6	10.5	4.4	-0.6	-0.2	-	-
	100~199명	18.0	7.7	17.3	7.8	-0.7	0.1	-	-
	50~99명	15.9	7.9	16.4	8.2	0.5	0.3	-	-
	5~49명	32.3	27.7	34.3	28.3	2.0	0.6	-	-
	4명 이하	3.3	6.4	3.5	7.1	0.2	0.7	-	-

주1) 기업체 규모 '미상' 포함

라. 산업별 출산휴가자

부(父)는 제조업(42.0%), 모(母)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3.4%)에서 비중이 가장 높음

□ ’24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부(父)*가 종사하고 있는 산업별 비중은 제조업이 42.0%로 가장 높았고, 도매 및 소매업(12.4%),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0.3%) 순임

* 고용보험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배우자 출산휴가에 한하여 지원함에 유의

□ ’24년 출산휴가를 사용한 모(母)가 종사하고 있는 산업별 비중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23.4%로 가장 높았고, 제조업(14.1%),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3.2%) 순임

< 산업별 출산휴가자 >

(단위: 명, %, %p)

		2023년		2024년P		증감		증감률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출산휴가자	계	16,171	73,681	18,293	80,348	2,122	6,667	13.1	9.0
	제조업	7,274	10,496	7,681	11,299	407	803	5.6	7.7
	건설업	620	1,694	732	1,716	112	22	18.1	1.3
	도매 및 소매업	1,964	8,373	2,266	9,250	302	877	15.4	10.5
	운수 및 창고업	490	2,223	578	2,326	88	103	18.0	4.6
	숙박 및 음식점업	201	1,266	297	1,551	96	285	47.8	22.5
	정보통신업	1,612	4,558	1,766	5,079	154	521	9.6	11.4
	금융 및 보험업	474	5,667	534	5,655	60	-12	12.7	-0.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461	9,551	1,884	10,611	423	1,060	29.0	11.1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58	3,825	829	4,027	71	202	9.4	5.3
	교육 서비스업	100	3,102	140	3,153	40	51	40.0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91	16,793	686	18,778	95	1,985	16.1	11.8
	기타[1)]	626	6,134	900	6,903	274	769	43.8	12.5
비중	계	100.0	100.0	100.0	100.0	-	-	-	-
	제조업	45.0	14.2	42.0	14.1	-3.0	-0.2	-	-
	건설업	3.8	2.3	4.0	2.1	0.2	-0.2	-	-
	도매 및 소매업	12.1	11.4	12.4	11.5	0.2	0.1	-	-
	운수 및 창고업	3.0	3.0	3.2	2.9	0.1	-0.1	-	-
	숙박 및 음식점업	1.2	1.7	1.6	1.9	0.4	0.2	-	-
	정보통신업	10.0	6.2	9.7	6.3	-0.3	0.1	-	-
	금융 및 보험업	2.9	7.7	2.9	7.0	0.0	-0.7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0	13.0	10.3	13.2	1.3	0.2	-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4.7	5.2	4.5	5.0	-0.2	-0.2	-	-
	교육 서비스업	0.6	4.2	0.8	3.9	0.1	-0.3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7	22.8	3.8	23.4	0.1	0.6	-	-
	기타[1)]	3.9	8.3	4.9	8.6	1.0	0.3	-	-

주1) 농림어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미상 등 포함

통계표

1. 전체 육아휴직자

1-1. 전체 육아휴직자 ····· 28
1-2. 연령대별 전체 육아휴직자 ····· 29
1-3. 기업체 규모별 전체 육아휴직자 ····· 30
1-4. 산업별 전체 육아휴직자 ····· 31
1-5. 시도별 전체 육아휴직자 ····· 32

2. 출생아 부모의 출생연도 육아휴직

2-1.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2-1-1.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 33
2-1-2.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 34
2-1-3.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 ····· 35
2-1-4. 출생아 부모 중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자 ····· 36
2-1-5. 출생아 부모 중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대상자 ····· 37

2-2. 연령대별 육아휴직

2-2-1. 연령대별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 38
2-2-2. 연령대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 39
2-2-3. 연령대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 ····· 40

2-3. 기업체 규모별 육아휴직

2-3-1. 기업체 규모별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 41
2-3-2. 기업체 규모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 42
2-3-3. 기업체 규모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 ····· 43

2-4. 산업별 육아휴직

2-4-1. 산업별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 44
2-4-2. 산업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 45
2-4-3. 산업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 ····· 46

2-5. 시도별 육아휴직

2-5-1. 시도별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 47
2-5-2. 시도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 48
2-5-3. 시도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 ····· 49

3. 1자녀 부모 육아휴직 사용 현황(전기간 t~t+9)

3-1. 자녀 연령별 육아휴직 사용 비율 ····· 50
3-2. 육아휴직 사용횟수 비율 ····· 50

4. 출산 전·후 모(母)의 취업 비율 ····· 51

5. 출산휴가자

5-1. 출산휴가자 ····· 53
5-2. 연령대별 출산휴가자 ····· 53
5-3. 기업체 규모별 출산휴가자 ····· 54
5-4. 산업별 출산휴가자 ····· 54

1. 전체 육아휴직자

1-1. 전체 육아휴직자

(단위: 명)

	전체	부	모
2015년	136,560	8,220	128,340
2016년	140,403	11,965	128,438
2017년	142,038	18,160	123,878
2018년	153,741	25,062	128,679
2019년	163,256	32,051	131,205
2020년	171,959	38,813	133,146
2021년	175,110	42,197	132,913
2022년	202,093	54,565	147,528
2023년	198,218	50,815	147,403
2024년[P]	206,226	60,117	146,109

1-2. 연령대별 전체 육아휴직자

(단위: 명)

		계	30세 미만	30~34세	35~39세	40세 이상
2015년	전체	136,560	22,423	67,384	38,050	8,703
	부	8,220	278	2,215	3,489	2,238
	모	128,340	22,145	65,169	34,561	6,465
2016년	전체	140,403	21,259	65,286	43,165	10,693
	부	11,965	372	3,246	5,223	3,124
	모	128,438	20,887	62,040	37,942	7,569
2017년	전체	142,038	19,674	60,318	48,520	13,526
	부	18,160	611	4,633	8,084	4,832
	모	123,878	19,063	55,685	40,436	8,694
2018년	전체	153,741	18,927	59,878	56,626	18,310
	부	25,062	836	5,956	11,310	6,960
	모	128,679	18,091	53,922	45,316	11,350
2019년	전체	163,256	17,880	60,204	61,771	23,401
	부	32,051	1,140	6,837	14,453	9,621
	모	131,205	16,740	53,367	47,318	13,780
2020년	전체	171,959	16,904	60,898	64,601	29,556
	부	38,813	1,323	7,966	16,831	12,693
	모	133,146	15,581	52,932	47,770	16,863
2021년	전체	175,110	16,156	61,659	64,301	32,994
	부	42,197	1,356	8,456	17,620	14,765
	모	132,913	14,800	53,203	46,681	18,229
2022년	전체	202,093	16,920	71,987	71,897	41,289
	부	54,565	1,747	11,856	21,654	19,308
	모	147,528	15,173	60,131	50,243	21,981
2023년	전체	198,218	16,032	72,644	68,746	40,796
	부	50,815	1,554	11,701	19,422	18,138
	모	147,403	14,478	60,943	49,324	22,658
2024년[P]	전체	206,226	15,785	77,663	71,475	41,303
	부	60,117	2,124	14,949	23,291	19,753
	모	146,109	13,661	62,714	48,184	21,550

1-3. 기업체 규모별 전체 육아휴직자

(단위: 명)

		계	300명 이상	50~299명	200~299명	100~199명	50~99명	5~49명	4명 이하	미상
2015년	전체	136,560	92,550	17,004	4,200	6,932	5,872	20,804	5,324	878
	부	8,220	5,977	1,031	259	419	353	892	276	44
	모	128,340	86,573	15,973	3,941	6,513	5,519	19,912	5,048	834
2016년	전체	140,403	95,838	17,558	4,531	7,118	5,908	20,893	5,058	1,056
	부	11,965	8,705	1,471	379	597	495	1,207	445	137
	모	128,438	87,133	16,087	4,152	6,521	5,413	19,686	4,613	919
2017년	전체	142,038	96,294	18,522	4,620	7,640	6,262	21,111	5,321	790
	부	18,160	13,392	2,269	559	942	768	1,767	617	115
	모	123,878	82,902	16,253	4,061	6,698	5,494	19,344	4,704	675
2018년	전체	153,741	102,323	20,654	5,436	8,212	7,006	23,644	5,991	1,129
	부	25,062	18,056	3,359	897	1,389	1,073	2,529	879	239
	모	128,679	84,267	17,295	4,539	6,823	5,933	21,115	5,112	890
2019년	전체	163,256	106,308	22,622	5,922	8,992	7,707	26,444	6,907	975
	부	32,051	22,594	4,560	1,298	1,813	1,450	3,543	1,184	170
	모	131,205	83,714	18,062	4,624	7,179	6,257	22,901	5,723	805
2020년	전체	171,959	109,641	24,480	6,161	9,971	8,348	29,077	7,944	817
	부	38,813	26,684	5,844	1,537	2,475	1,832	4,650	1,493	142
	모	133,146	82,957	18,636	4,624	7,496	6,516	24,427	6,451	675
2021년	전체	175,110	113,452	24,731	6,194	9,840	8,697	28,611	7,493	823
	부	42,197	30,065	6,106	1,617	2,511	1,978	4,404	1,425	197
	모	132,913	83,387	18,625	4,577	7,329	6,719	24,207	6,068	626
2022년	전체	202,093	127,599	29,184	7,197	11,745	10,242	34,456	10,005	849
	부	54,565	38,463	7,931	2,150	3,353	2,428	5,858	2,146	167
	모	147,528	89,136	21,253	5,047	8,392	7,814	28,598	7,859	682
2023년	전체	198,218	122,504	28,907	6,961	11,479	10,467	35,526	10,333	948
	부	50,815	35,759	7,386	2,099	3,034	2,253	5,527	1,967	176
	모	147,403	86,745	21,521	4,862	8,445	8,214	29,999	8,366	772
2024년[P]	전체	206,226	125,079	30,871	7,423	12,165	11,283	38,578	10,817	881
	부	60,117	40,810	8,918	2,482	3,648	2,788	7,612	2,560	217
	모	146,109	84,269	21,953	4,941	8,517	8,495	30,966	8,257	664

1-4. 산업별 전체 육아휴직자

(단위: 명)

		계	제조업	건설업	도매및 소매업	운수및 창고업	숙박및 음식점업	정보 통신업	금융및 보험업	전문·과학· 기술업	사업시설· 지원업	공공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사회 복지업	기타*
2015년	전체	136,560	16,568	2,372	9,442	3,227	1,098	6,480	13,203	11,057	7,678	19,832	20,256	20,624	4,723
	부	8,220	1,401	249	522	299	88	702	297	852	317	2,173	610	221	489
	모	128,340	15,167	2,123	8,920	2,928	1,010	5,778	12,906	10,205	7,361	17,659	19,646	20,403	4,234
2016년	전체	140,403	17,405	2,866	9,885	3,163	1,213	6,233	13,287	11,256	8,049	20,614	20,683	20,887	4,862
	부	11,965	2,336	948	811	348	124	850	404	1,177	494	2,717	728	310	718
	모	128,438	15,069	1,918	9,074	2,815	1,089	5,383	12,883	10,079	7,555	17,897	19,955	20,577	4,144
2017년	전체	142,038	18,632	2,536	10,545	3,217	1,410	6,449	12,308	12,504	7,641	21,278	19,887	20,671	4,960
	부	18,160	4,637	734	1,435	580	251	1,129	597	2,135	659	3,619	1,026	446	912
	모	123,878	13,995	1,802	9,110	2,637	1,159	5,320	11,711	10,369	6,982	17,659	18,861	20,225	4,048
2018년	전체	153,741	17,397	3,053	11,184	3,990	1,645	7,084	12,429	16,509	7,963	23,331	20,588	22,490	6,078
	부	25,062	4,976	1,169	1,817	1,141	333	1,643	890	3,475	1,005	5,016	1,503	634	1,460
	모	128,679	12,421	1,884	9,367	2,849	1,312	5,441	11,539	13,034	6,958	18,315	19,085	21,856	4,618
2019년	전체	163,256	21,616	3,135	12,814	4,150	1,869	7,436	12,071	15,247	8,751	25,357	20,225	24,348	6,237
	부	32,051	7,586	1,078	2,751	1,224	426	1,996	1,075	3,470	1,495	6,564	1,784	899	1,703
	모	131,205	14,030	2,057	10,063	2,926	1,443	5,440	10,996	11,777	7,256	18,793	18,441	23,449	4,534
2020년	전체	171,959	22,711	3,229	13,903	4,416	2,390	7,632	11,600	16,334	9,347	27,434	20,556	25,682	6,725
	부	38,813	8,782	1,180	3,023	1,689	723	2,277	1,242	4,556	2,318	7,606	2,224	1,146	2,047
	모	133,146	13,929	2,049	10,880	2,727	1,667	5,355	10,358	11,778	7,029	19,828	18,332	24,536	4,678
2021년	전체	175,110	23,953	3,362	14,085	4,597	2,410	7,035	11,546	16,305	8,596	30,189	19,965	26,020	7,047
	부	42,197	9,768	1,297	3,699	1,768	722	2,033	1,425	4,365	2,257	9,098	2,286	1,236	2,243
	모	132,913	14,185	2,065	10,386	2,829	1,688	5,002	10,121	11,940	6,339	21,091	17,679	24,784	4,804
2022년	전체	202,093	28,284	4,086	17,112	5,822	2,869	8,724	12,717	18,983	9,708	33,585	21,679	30,070	8,454
	부	54,565	12,199	1,712	5,004	2,562	856	2,820	2,086	5,404	2,911	11,161	3,009	1,866	2,975
	모	147,528	16,085	2,374	12,108	3,260	2,013	5,904	10,631	13,579	6,797	22,424	18,670	28,204	5,479
2023년	전체	198,218	27,647	4,048	16,528	6,087	2,961	9,117	11,758	19,336	9,201	32,218	20,222	30,559	8,536
	부	50,815	11,352	1,604	3,886	2,651	740	2,860	1,947	5,256	2,586	10,496	2,632	1,857	2,948
	모	147,403	16,295	2,444	12,642	3,436	2,221	6,257	9,811	14,080	6,615	21,722	17,590	28,702	5,588
2024년P	전체	206,226	29,301	4,509	17,072	6,354	3,269	10,016	11,702	20,804	9,487	32,968	19,128	31,917	9,699
	부	60,117	13,392	2,076	4,699	3,036	926	3,611	2,409	6,389	2,978	11,775	2,899	2,270	3,657
	모	146,109	15,909	2,433	12,373	3,318	2,343	6,405	9,293	14,415	6,509	21,193	16,229	29,647	6,042

* 기타 : 농림어업, 광업,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부동산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단체·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고용·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외국기관 및 산업분류 미상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 10차 개정(2017년) 기준임

1-5. 시도별 전체 육아휴직자

(단위: 명)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5년	전체	136,560	32,036	7,931	5,844	7,325	4,157	4,528	2,611	1,195	36,653	2,937	3,713	4,735	3,593	3,084	5,352	7,075	1,896
	부	8,220	1,707	412	331	441	211	238	136	109	2,240	235	229	316	243	196	310	360	186
	모	128,340	30,329	7,519	5,513	6,884	3,946	4,290	2,475	1,086	34,413	2,702	3,484	4,419	3,350	2,888	5,042	6,715	1,710
2016년	전체	140,403	32,439	8,106	6,114	7,286	4,278	4,494	2,724	1,569	37,661	2,929	3,883	4,901	3,664	3,244	5,451	7,488	2,107
	부	11,965	2,694	575	409	580	295	305	214	171	3,196	307	285	446	286	295	387	810	263
	모	128,438	29,745	7,531	5,705	6,706	3,983	4,189	2,510	1,398	34,465	2,622	3,598	4,455	3,378	2,949	5,064	6,678	1,844
2017년	전체	142,038	31,636	8,009	5,956	7,221	4,213	4,628	2,840	1,838	37,955	3,132	3,838	4,975	3,719	3,409	5,416	8,805	2,198
	부	18,160	3,496	988	631	825	455	477	410	270	4,428	425	438	627	428	467	657	2,258	349
	모	123,878	28,140	7,021	5,325	6,396	3,758	4,151	2,430	1,568	33,527	2,707	3,400	4,348	3,291	2,942	4,759	6,547	1,849
2018년	전체	153,741	33,161	8,520	6,277	7,940	4,669	4,648	3,145	2,355	42,016	3,637	4,286	5,523	4,028	3,996	5,921	8,563	2,500
	부	25,062	4,809	1,293	866	1,252	720	680	663	466	6,520	687	683	931	589	817	970	1,892	500
	모	128,679	28,352	7,227	5,411	6,688	3,949	3,968	2,482	1,889	35,496	2,950	3,603	4,592	3,439	3,179	4,951	6,671	2,000
2019년	전체	163,256	34,314	8,843	6,602	8,787	4,868	4,862	3,338	2,681	44,858	3,976	4,564	5,844	4,204	4,479	6,177	9,371	2,743
	부	32,051	5,554	1,669	1,096	1,722	963	937	871	648	8,490	838	897	1,291	795	989	1,279	2,548	672
	모	131,205	28,760	7,174	5,506	7,065	3,905	3,925	2,467	2,033	36,368	3,138	3,667	4,553	3,409	3,490	4,898	6,823	2,071
2020년	전체	169,345	34,105	9,576	6,762	9,280	5,036	5,031	3,450	2,909	47,568	4,310	4,909	6,385	4,428	4,694	6,625	9,504	2,904
	부	38,511	6,671	2,127	1,390	2,268	1,186	1,081	1,013	774	10,562	1,051	1,134	1,613	980	1,112	1,583	2,595	808
	모	130,834	27,434	7,449	5,372	7,012	3,850	3,950	2,437	2,135	37,006	3,259	3,775	4,772	3,448	3,582	5,042	6,909	2,096
2021년	전체	175,110	34,477	9,971	6,859	9,217	5,422	5,195	3,663	3,333	49,967	4,458	5,272	6,777	4,582	4,804	6,709	9,616	2,970
	부	42,197	6,974	2,363	1,606	2,362	1,309	1,200	1,109	966	11,829	1,168	1,324	1,925	1,017	1,270	1,742	2,606	857
	모	132,913	27,503	7,608	5,253	6,855	4,113	3,995	2,554	2,367	38,138	3,290	3,948	4,852	3,565	3,534	4,967	7,010	2,113
2022년	전체	202,093	37,972	11,324	7,889	11,457	6,089	6,299	4,034	3,864	58,662	5,480	5,886	7,788	5,350	5,465	7,672	10,667	3,386
	부	54,565	8,881	3,038	2,029	3,322	1,588	1,662	1,294	1,305	15,295	1,627	1,626	2,441	1,456	1,626	2,225	3,059	1,157
	모	147,528	29,091	8,286	5,860	8,135	4,501	4,637	2,740	2,559	43,367	3,853	4,260	5,347	3,894	3,839	5,447	7,608	2,229
2023년	전체	198,218	36,707	11,053	7,752	11,265	5,600	6,124	4,001	3,654	58,296	5,553	6,059	7,597	5,356	5,565	7,461	10,160	3,035
	부	50,815	8,129	2,750	1,895	3,101	1,373	1,554	1,118	1,197	14,351	1,648	1,644	2,325	1,406	1,528	2,128	2,709	997
	모	147,403	28,578	8,303	5,857	8,164	4,227	4,570	2,883	2,457	43,945	3,905	4,415	5,272	3,950	4,037	5,333	7,451	2,038
2024년P	전체	206,226	37,265	11,358	8,142	12,549	5,734	6,517	4,016	3,583	60,917	5,610	6,473	8,158	5,494	5,994	7,904	10,534	3,149
	부	60,117	9,566	3,300	2,245	3,754	1,686	1,917	1,257	1,234	17,346	1,877	2,014	2,685	1,646	1,809	2,524	3,180	1,131
	모	146,109	27,699	8,058	5,897	8,795	4,048	4,600	2,759	2,349	43,571	3,733	4,459	5,473	3,848	4,185	5,380	7,354	2,018

* 거주지 미연계자 포함

2. 출생아 부모의 출생연도 육아휴직

2-1.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2-1-1.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단위: %)

	전체	부	모
2015년	19.1	0.6	59.1
2016년	20.0	0.9	60.4
2017년	21.6	1.8	62.2
2018년	22.5	2.4	62.9
2019년	24.0	3.0	64.6
2020년	25.5	3.6	65.7
2021년	27.0	4.3	66.9
2022년	31.2	7.1	71.1
2023년	33.0	7.5	73.2
2024년[P]	34.7	10.2	72.2

2-1-2.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단위: 명)

	전체	부	모	부&모*	출생아 수
2015년	78,395	1,752	76,643	774	438,420
2016년	77,089	2,375	74,714	1,108	406,243
2017년	73,962	4,126	69,836	2,110	357,771
2018년	75,227	5,278	69,949	2,706	326,822
2019년	76,136	6,340	69,796	3,644	302,676
2020년	74,275	6,871	67,404	4,828	272,337
2021년	77,391	7,933	69,458	5,844	260,562
2022년	88,118	12,486	75,632	13,060	249,186
2023년	88,268	12,193	76,075	13,196	230,028
2024년P	96,810	17,074	79,736	20,662	238,317

* 출생연도에 부와 모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임

2-1-3.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

(단위: 명)

	전체	부	모	출생아 수
2015년	409,421	279,698	129,723	438,420
2016년	385,819	262,125	123,694	406,243
2017년	343,178	230,910	112,268	357,771
2018년	333,624	222,335	111,289	326,822
2019년	316,880	208,795	108,085	302,676
2020년	291,511	188,882	102,629	272,337
2021년	286,966	183,144	103,822	260,562
2022년	282,199	175,865	106,334	249,186
2023년	267,186	163,228	103,958	230,028
2024년[P]	278,619	168,202	110,417	238,317

2-1-4. 출생아 부모 중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자

(단위: 출생아 100명당 명)

	전체	부	모
2015년	17.9	0.4	17.5
2016년	19.0	0.6	18.4
2017년	20.7	1.2	19.5
2018년	23.0	1.6	21.4
2019년	25.2	2.1	23.1
2020년	27.3	2.5	24.8
2021년	29.7	3.0	26.7
2022년	35.4	5.0	30.4
2023년	38.4	5.3	33.1
2024년[P]	40.6	7.2	33.5

2-1-5. 출생아 부모 중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대상자

(단위: 출생아 100명당 명)

	전체	부	모
2015년	93.4	63.8	29.6
2016년	95.0	64.5	30.4
2017년	95.9	64.5	31.4
2018년	102.1	68.0	34.1
2019년	104.7	69.0	35.7
2020년	107.0	69.4	37.7
2021년	110.1	70.3	39.8
2022년	113.2	70.6	42.7
2023년	116.2	71.0	45.2
2024년[P]	116.9	70.6	46.3

2-2. 연령대별 육아휴직

2-2-1. 연령대별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단위: %)

		계	30세 미만	30~34세	35~39세	40세 이상
2015년	전체	19.1	31.0	21.5	12.3	4.9
	부	0.6	0.4	0.6	0.7	0.7
	모	59.1	63.9	59.8	53.0	45.8
2016년	전체	20.0	31.6	22.9	13.5	5.6
	부	0.9	0.7	0.9	1.0	0.9
	모	60.4	64.2	61.6	54.8	48.9
2017년	전체	21.6	33.8	25.0	15.5	6.5
	부	1.8	1.5	1.8	1.9	1.6
	모	62.2	66.2	63.8	56.8	49.7
2018년	전체	22.5	33.4	26.7	17.0	7.6
	부	2.4	2.0	2.4	2.6	2.1
	모	62.9	66.3	65.0	57.8	50.0
2019년	전체	24.0	34.9	29.0	18.4	9.0
	부	3.0	2.9	2.9	3.3	2.7
	모	64.6	67.7	67.2	59.4	52.9
2020년	전체	25.5	36.3	30.8	19.9	9.9
	부	3.6	3.7	3.6	3.9	2.9
	모	65.7	68.4	68.3	60.8	55.2
2021년	전체	27.0	37.8	32.9	21.3	11.6
	부	4.3	4.2	4.4	4.4	4.0
	모	66.9	69.5	69.3	62.8	56.1
2022년	전체	31.2	42.2	37.6	25.5	14.8
	부	7.1	7.4	7.2	7.3	6.1
	모	71.1	73.8	73.7	67.0	59.6
2023년	전체	33.0	44.3	39.8	27.5	15.7
	부	7.5	7.5	8.0	7.5	6.2
	모	73.2	76.3	75.7	69.4	61.0
2024년[P]	전체	34.7	46.4	41.4	29.1	17.2
	부	10.2	11.8	11.0	9.9	8.0
	모	72.2	75.9	74.6	68.1	61.6

2-2-2. 연령대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단위: 명)

		계	30세 미만	30~34세	35~39세	40세 이상
2015년	전체	78,395	18,076	44,961	13,962	1,396
	부	1,752	131	780	659	182
	모	76,643	17,945	44,181	13,303	1,214
2016년	전체	77,089	16,809	43,159	15,501	1,620
	부	2,375	191	1,054	896	234
	모	74,714	16,618	42,105	14,605	1,386
2017년	전체	73,962	15,564	39,277	17,293	1,828
	부	4,126	358	1,771	1,595	402
	모	69,836	15,206	37,506	15,698	1,426
2018년	전체	75,227	14,711	38,743	19,542	2,231
	부	5,278	443	2,111	2,168	556
	모	69,949	14,268	36,632	17,374	1,675
2019년	전체	76,136	13,672	38,944	20,779	2,741
	부	6,340	582	2,352	2,681	725
	모	69,796	13,090	36,592	18,098	2,016
2020년	전체	74,275	12,697	38,114	20,443	3,021
	부	6,871	633	2,608	2,857	773
	모	67,404	12,064	35,506	17,586	2,248
2021년	전체	77,391	12,143	39,959	21,589	3,700
	부	7,933	657	3,012	3,176	1,088
	모	69,458	11,486	36,947	18,413	2,612
2022년	전체	88,118	12,358	45,975	24,975	4,810
	부	12,486	1,031	4,813	4,968	1,674
	모	75,632	11,327	41,162	20,007	3,136
2023년	전체	88,268	11,607	46,225	25,344	5,092
	부	12,193	909	4,924	4,681	1,679
	모	76,075	10,698	41,301	20,663	3,413
2024년[P]	전체	96,810	11,606	51,379	28,241	5,584
	부	17,074	1,365	7,089	6,457	2,163
	모	79,736	10,241	44,290	21,784	3,421

2-2-3. 연령대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

(단위: 명)

		계	30세 미만	30~34세	35~39세	40세 이상
2015년	전체	409,421	58,355	208,856	113,544	28,666
	부	279,698	30,281	134,945	88,456	26,016
	모	129,723	28,074	73,911	25,088	2,650
2016년	전체	385,819	53,232	188,510	115,083	28,994
	부	262,125	27,337	120,180	88,448	26,160
	모	123,694	25,895	68,330	26,635	2,834
2017년	전체	343,178	46,096	157,038	111,795	28,249
	부	230,910	23,111	98,241	84,177	25,381
	모	112,268	22,985	58,797	27,618	2,868
2018년	전체	333,624	44,105	145,025	114,974	29,520
	부	222,335	22,594	88,640	84,931	26,170
	모	111,289	21,511	56,385	30,043	3,350
2019년	전체	316,880	39,224	134,357	112,834	30,465
	부	208,795	19,892	79,891	82,361	26,651
	모	108,085	19,332	54,466	30,473	3,814
2020년	전체	291,511	34,932	123,589	102,559	30,431
	부	188,882	17,286	71,623	73,614	26,359
	모	102,629	17,646	51,966	28,945	4,072
2021년	전체	286,966	32,145	121,517	101,454	31,850
	부	183,144	15,623	68,201	72,129	27,191
	모	103,822	16,522	53,316	29,325	4,659
2022년	전체	282,199	29,301	122,353	97,978	32,567
	부	175,865	13,961	66,467	68,136	27,301
	모	106,334	15,340	55,886	29,842	5,266
2023년	전체	267,186	26,201	116,226	92,226	32,533
	부	163,228	12,184	61,662	62,440	26,942
	모	103,958	14,017	54,564	29,786	5,591
2024년[P]	전체	278,619	25,031	124,089	96,975	32,524
	부	168,202	11,545	64,700	64,989	26,968
	모	110,417	13,486	59,389	31,986	5,556

2-3. 기업체 규모별 육아휴직

2-3-1. 기업체 규모별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단위: %)

		계	300명 이상	50~299명	200~299명	100~199명	50~99명	5~49명	4명 이하
2015년	전체	19.1	25.0	13.9	14.8	14.2	13.1	13.4	10.8
	부	0.6	0.9	0.5	0.5	0.4	0.5	0.3	0.5
	모	59.1	68.7	57.4	61.9	57.9	54.2	44.5	32.8
2016년	전체	20.0	26.2	14.8	16.5	15.3	13.4	13.8	10.4
	부	0.9	1.3	0.6	0.7	0.6	0.6	0.5	0.7
	모	60.4	70.7	60.0	65.8	61.2	55.2	45.1	30.3
2017년	전체	21.6	28.0	17.0	18.5	17.5	15.5	15.0	10.7
	부	1.8	2.6	1.1	1.2	1.1	1.1	0.9	1.2
	모	62.2	72.5	64.8	69.0	65.9	60.8	46.7	30.1
2018년	전체	22.5	29.6	18.6	20.8	18.7	17.1	15.8	10.1
	부	2.4	3.6	1.7	1.8	1.7	1.5	1.1	1.1
	모	62.9	74.4	67.8	72.2	68.6	64	47.8	27.0
2019년	전체	24.0	30.5	20.9	22.5	21.1	19.6	17.8	11.3
	부	3.0	4.3	2.4	2.8	2.4	2.1	1.6	1.7
	모	64.6	75.4	70.6	75.2	71.4	66.8	51.5	28.6
2020년	전체	25.5	31.7	22.8	23.9	23.3	21.6	19.6	11.8
	부	3.6	5.1	3.0	3.3	3.1	2.6	2.0	1.7
	모	65.7	75.6	72.7	76.0	73.2	69.9	53.8	29.4
2021년	전체	27.0	32.9	24.8	25.8	24.9	24	21.1	11.8
	부	4.3	6.0	3.4	3.6	3.6	3.1	2.3	1.9
	모	66.9	76.5	74.8	79.0	74.6	72.3	54.9	28.8
2022년	전체	31.2	36.2	29.9	30	30.8	28.9	26.4	17.1
	부	7.1	9.2	5.9	6.5	6.4	5.0	4.5	4.4
	모	71.1	78.7	79.7	81.8	80.8	77.4	62.7	36.7
2023년	전체	33.0	37.6	32.0	32.0	32.3	31.7	29.7	18.0
	부	7.5	9.6	6.5	7.3	6.8	5.6	4.7	4.0
	모	73.2	79.8	81.2	82.0	82.3	79.8	66.8	39.8
2024년[P]	전체	34.7	38.7	34.3	33.8	34.6	34.4	32.6	20.7
	부	10.2	12.5	9.2	10.4	9.4	8.1	7.2	6.2
	모	72.2	78.4	79.9	80.8	80.0	79.2	67.5	41.0

2-3-2. 기업체 규모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단위: 명)

		계	300명 이상	50~299명	200~299명	100~199명	50~99명	5~49명	4명 이하	미상
2015년	전체	78,395	51,439	10,769	2,599	4,320	3,850	12,738	3,039	410
	부	1,752	1,148	273	67	104	102	234	87	10
	모	76,643	50,291	10,496	2,532	4,216	3,748	12,504	2,952	400
2016년	전체	77,089	50,699	10,678	2,729	4,306	3,643	12,387	2,879	446
	부	2,375	1,559	345	93	130	122	321	136	14
	모	74,714	49,140	10,333	2,636	4,176	3,521	12,066	2,743	432
2017년	전체	73,962	48,344	10,625	2,676	4,331	3,618	11,857	2,813	323
	부	4,126	2,894	533	134	210	189	483	202	14
	모	69,836	45,450	10,092	2,542	4,121	3,429	11,374	2,611	309
2018년	전체	75,227	48,453	11,039	2,941	4,294	3,804	12,440	2,910	385
	부	5,278	3,706	729	182	300	247	611	209	23
	모	69,949	44,747	10,310	2,759	3,994	3,557	11,829	2,701	362
2019년	전체	76,136	47,776	11,619	3,006	4,595	4,018	13,269	3,134	338
	부	6,340	4,234	974	275	381	318	805	298	29
	모	69,796	43,542	10,645	2,731	4,214	3,700	12,464	2,836	309
2020년	전체	74,275	46,274	11,380	2,885	4,500	3,995	13,272	3,068	281
	부	6,871	4,610	1,057	285	424	348	906	278	20
	모	67,404	41,664	10,323	2,600	4,076	3,647	12,366	2,790	261
2021년	전체	77,391	48,818	11,799	2,942	4,578	4,279	13,554	2,961	259
	부	7,933	5,535	1,133	293	457	383	939	301	25
	모	69,458	43,283	10,666	2,649	4,121	3,896	12,615	2,660	234
2022년	전체	88,118	53,062	13,946	3,376	5,516	5,054	16,573	4,230	307
	부	12,486	8,201	1,857	504	764	589	1,744	653	31
	모	75,632	44,861	12,089	2,872	4,752	4,465	14,829	3,577	276
2023년	전체	88,268	52,015	14,066	3,257	5,511	5,298	17,589	4,254	344
	부	12,193	8,041	1,872	496	763	613	1,658	581	41
	모	76,075	43,974	12,194	2,761	4,748	4,685	15,931	3,673	303
2024년[P]	전체	96,810	55,973	15,584	3,572	6,021	5,991	19,805	4,957	491
	부	17,074	10,896	2,674	731	1,053	890	2,552	858	94
	모	79,736	45,077	12,910	2,841	4,968	5,101	17,253	4,099	397

2-3-3. 기업체 규모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

(단위: 명)

		계	300명 이상	50~299명	200~299명	100~199명	50~99명	5~49명	4명 이하	미상
2015년	전체	409,421	206,052	77,415	17,596	30,451	29,368	95,315	28,027	2,612
	부	279,698	132,815	59,133	13,508	23,167	22,458	67,186	19,020	1,544
	모	129,723	73,237	18,282	4,088	7,284	6,910	28,129	9,007	1,068
2016년	전체	385,819	193,342	71,938	16,503	28,152	27,283	89,975	27,740	2,824
	부	262,125	123,871	54,729	12,495	21,325	20,909	63,196	18,692	1,637
	모	123,694	69,471	17,209	4,008	6,827	6,374	26,779	9,048	1,187
2017년	전체	343,178	172,949	62,601	14,480	24,712	23,409	79,031	26,178	2,419
	부	230,910	110,235	47,021	10,796	18,458	17,767	54,660	17,500	1,494
	모	112,268	62,714	15,580	3,684	6,254	5,642	24,371	8,678	925
2018년	전체	333,624	163,938	59,306	14,113	23,008	22,185	78,867	28,820	2,693
	부	222,335	103,784	44,104	10,293	17,184	16,627	54,102	18,831	1,514
	모	111,289	60,154	15,202	3,820	5,824	5,558	24,765	9,989	1,179
2019년	전체	316,880	156,537	55,661	13,359	21,780	20,522	74,397	27,712	2,573
	부	208,795	98,786	40,590	9,727	15,878	14,985	50,177	17,808	1,434
	모	108,085	57,751	15,071	3,632	5,902	5,537	24,220	9,904	1,139
2020년	전체	291,511	146,102	49,904	12,087	19,345	18,472	67,698	26,103	1,704
	부	188,882	90,959	35,700	8,665	13,778	13,257	44,727	16,610	886
	모	102,629	55,143	14,204	3,422	5,567	5,215	22,971	9,493	818
2021년	전체	286,966	148,382	47,602	11,383	18,372	17,847	64,144	25,009	1,829
	부	183,144	91,799	33,335	8,029	12,846	12,460	41,184	15,771	1,055
	모	103,822	56,583	14,267	3,354	5,526	5,387	22,960	9,238	774
2022년	전체	282,199	146,426	46,633	11,262	17,910	17,461	62,685	24,715	1,740
	부	175,865	89,452	31,474	7,753	12,028	11,693	39,021	14,964	954
	모	106,334	56,974	15,159	3,509	5,882	5,768	23,664	9,751	786
2023년	전체	267,186	138,487	43,941	10,179	17,037	16,725	59,322	23,658	1,778
	부	163,228	83,414	28,931	6,812	11,267	10,852	35,486	14,425	972
	모	103,958	55,073	15,010	3,367	5,770	5,873	23,836	9,233	806
2024년[P]	전체	278,619	144,570	45,381	10,576	17,409	17,396	60,842	23,956	3,870
	부	168,202	87,039	29,222	7,062	11,201	10,959	35,277	13,949	2,715
	모	110,417	57,531	16,159	3,514	6,208	6,437	25,565	10,007	1,155

2-4. 산업별 육아휴직

2-4-1. 산업별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단위: %)

		계	제조업	건설업	도매및 소매업	운수및 창고업	숙박및 음식점업	정보 통신업	금융및 보험업	전문·과학· 기술업	사업시설· 지원업	공공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사회 복지업	기타*
2015년	전체	19.1	9.2	6.3	13.3	17.1	13.3	16.7	33.1	16.5	25.2	30.8	36.9	41.0	12.6
	부	0.6	0.4	0.3	0.4	0.7	0.7	0.9	0.4	0.6	0.8	2.0	1.0	0.5	0.6
	모	59.1	58.1	37.3	48.0	64.6	46.0	66.9	68.1	58.8	68.0	72.2	57.0	55.9	50.8
2016년	전체	20.0	9.6	6.4	13.9	17.4	13.0	17.1	34.0	17.8	27.6	31.7	38.4	42.5	12.9
	부	0.9	0.6	1.0	0.6	1.1	0.8	1.1	0.5	0.9	1.2	2.4	1.1	0.7	1.0
	모	60.4	58.2	34.8	49.7	64.7	41.5	68.6	69.8	60.3	70.3	73.8	59.3	58.2	50.1
2017년	전체	21.6	10.8	6.9	15.5	18.7	15.5	19.4	34.6	20.5	27.6	33.0	39.0	44.7	14.2
	부	1.8	1.3	1.2	1.7	1.9	2.3	1.9	1.3	2.5	1.9	3.7	1.8	1.4	1.5
	모	62.2	60.4	36.8	50.8	66.5	41.7	69.9	71.0	64.2	69.8	75.0	60.7	60.9	52.0
2018년	전체	22.5	10.9	7.4	16.3	19.5	14.1	20.5	35.7	22.3	27.6	34.9	39.1	46.8	15.6
	부	2.4	1.8	1.7	1.8	3.3	2.2	2.8	1.7	3.1	2.8	4.9	2.1	1.8	2.2
	모	62.9	58.0	32.9	51.1	67.4	36.0	71.8	73.5	66.9	69.4	76.9	61.3	63.8	53.1
2019년	전체	24.0	12.6	8.2	18.1	20.9	14.8	21.8	35.2	23.6	28.1	36.8	40.2	49.5	16.6
	부	3.0	2.5	1.8	2.7	3.6	2.8	3.3	2.2	3.6	3.7	6.1	3.1	2.4	2.7
	모	64.6	61.1	36.2	53.6	70.3	35.0	73.1	73.0	67.5	71.4	78.3	62.6	67.0	53.1
2020년	전체	25.5	14.1	8.7	19.1	21.2	17.9	22.4	35.3	24.4	29.9	37.6	41.3	50.8	17.8
	부	3.6	3.0	2.4	2.8	4.9	4.3	3.5	2.1	4.3	5.5	7.1	3.9	2.9	3.0
	모	65.7	63.6	37.3	54.4	69.3	40.0	71.0	74.3	67.6	71.8	78.4	63.7	68.5	55.2
2021년	전체	27.0	14.7	9.5	20.4	23.0	20.2	22.2	35.8	27.4	30.4	39.6	41.6	53.7	19.2
	부	4.3	3.4	2.5	3.6	5.2	6.1	3.5	2.5	5.1	6.1	9.0	4.3	3.5	4.0
	모	66.9	63.4	39.4	55.4	71.7	40.8	69.2	74.6	68.5	71.8	79.4	64.4	71.8	56.2
2022년	전체	31.2	18.5	12.5	25.2	27.7	24.0	26.2	39.4	30.8	36.6	43.1	43.3	59.2	22.9
	부	7.1	5.5	4.5	6.3	9.8	8.9	6.3	5.3	7.2	10.3	13.1	7.3	6.5	7.1
	모	71.1	69.3	44.5	60.7	75.1	45.3	73.9	78.7	73.0	78.2	80.7	65.6	77.2	60.9
2023년	전체	33.0	20.5	13.7	27.1	28.1	25.8	28.2	39.0	31.6	37.9	43.8	44.6	61.3	25.6
	부	7.5	6.5	4.6	5.6	10.3	7.9	6.9	4.9	7.2	10.7	13.1	6.3	7.5	7.9
	모	73.2	71.4	47.9	64.5	78.2	50.3	74.8	78.8	74.6	81.6	81.2	68.1	78.7	64.3
2024년p	전체	34.7	22.5	15.1	29.3	31.6	29.3	31.1	39.2	33.2	39.8	44.9	44.8	63.4	25.1
	부	10.2	9.1	6.7	7.8	14.8	10.8	9.9	7.6	10.1	13.7	16.1	8.3	10.8	9.4
	모	72.2	69.8	47.1	64.0	74.4	51.5	74.4	75.3	73.0	79.8	81.1	67.4	79.3	60.4

* 기타 : 농림어업, 광업,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부동산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단체·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고용·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외국기관 및 산업분류 미상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 10차 개정(2017년) 기준임

2-4-2. 산업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단위: 명)

		계	제조업	건설업	도매및 소매업	운수및 창고업	숙박및 음식점업	정보 통신업	금융및 보험업	전문·과학· 기술업	사업시설· 지원업	공공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사회 복지업	기타*
2015년	전체	78,395	10,331	1,349	5,769	1,876	691	3,716	7,649	6,711	4,266	10,540	9,602	13,209	2,686
	부	1,752	377	61	129	59	25	148	49	179	82	400	97	47	99
	모	76,643	9,954	1,288	5,640	1,817	666	3,568	7,600	6,532	4,184	10,140	9,505	13,162	2,587
2016년	전체	77,089	10,051	1,309	5,829	1,869	713	3,444	7,579	6,589	4,332	10,289	9,457	13,026	2,602
	부	2,375	536	173	182	91	29	174	58	248	112	467	96	57	152
	모	74,714	9,515	1,136	5,647	1,778	684	3,270	7,521	6,341	4,220	9,822	9,361	12,969	2,450
2017년	전체	73,962	9,633	1,223	5,891	1,773	821	3,468	6,766	6,997	3,874	10,065	8,583	12,309	2,559
	부	4,126	1,002	177	465	131	83	259	132	600	164	656	143	106	208
	모	69,836	8,631	1,046	5,426	1,642	738	3,209	6,634	6,397	3,710	9,409	8,440	12,203	2,351
2018년	전체	75,227	8,596	1,295	6,040	1,988	844	3,545	6,518	8,736	3,720	10,047	8,292	12,696	2,910
	부	5,278	1,163	242	482	254	84	361	166	862	241	814	167	132	310
	모	69,949	7,433	1,053	5,558	1,734	760	3,184	6,352	7,874	3,479	9,233	8,125	12,564	2,600
2019년	전체	76,136	9,731	1,332	6,439	1,958	892	3,543	6,011	7,875	3,745	10,555	7,961	13,218	2,876
	부	6,340	1,579	234	678	251	108	400	202	825	314	1,008	234	172	335
	모	69,796	8,152	1,098	5,761	1,707	784	3,143	5,809	7,050	3,431	9,547	7,727	13,046	2,541
2020년	전체	74,275	9,373	1,290	6,340	1,884	1,005	3,359	5,366	7,701	3,611	10,746	7,757	13,016	2,827
	부	6,871	1,605	285	635	325	148	381	177	932	416	1,155	274	200	338
	모	67,404	7,768	1,005	5,705	1,559	857	2,978	5,189	6,769	3,195	9,591	7,483	12,816	2,489
2021년	전체	77,391	9,641	1,317	6,524	2,057	1,055	3,304	5,591	8,135	3,388	11,958	7,717	13,657	3,047
	부	7,933	1,834	282	783	345	187	368	213	973	425	1,533	305	233	452
	모	69,458	7,807	1,035	5,741	1,712	868	2,936	5,378	7,162	2,963	10,425	7,412	13,424	2,595
2022년	전체	88,118	11,251	1,693	7,747	2,506	1,238	4,148	5,744	9,200	3,967	13,215	8,076	15,677	3,656
	부	12,486	2,683	484	1,265	638	268	696	409	1,372	686	2,222	522	439	802
	모	75,632	8,568	1,209	6,482	1,868	970	3,452	5,335	7,828	3,281	10,993	7,554	15,238	2,854
2023년	전체	88,268	11,275	1,719	7,684	2,536	1,332	4,234	5,174	9,395	3,871	13,313	7,814	16,225	3,696
	부	12,193	2,820	461	997	688	236	712	353	1,373	675	2,187	420	488	783
	모	76,075	8,455	1,258	6,687	1,848	1,096	3,522	4,821	8,022	3,196	11,126	7,394	15,737	2,913
2024년p	전체	96,810	12,685	1,876	8,468	2,779	1,595	4,817	5,404	10,485	4,172	14,202	7,884	17,957	4,486
	부	17,074	4,001	663	1,403	932	321	1,032	562	2,024	868	2,840	558	714	1,156
	모	79,736	8,684	1,213	7,065	1,847	1,274	3,785	4,842	8,461	3,304	11,362	7,326	17,243	3,330

* 기타 : 농림어업, 광업,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부동산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단체·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고용·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외국기관 및 산업분류 미상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 10차 개정(2017년) 기준임

2-4-3. 산업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

(단위: 명)

		계	제조업	건설업	도매및 소매업	운수및 창고업	숙박및 음식점업	정보 통신업	금융및 보험업	전문·과학· 기술업	사업시설· 지원업	공공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사회 복지업	기타*
2015년	전체	409,421	112,085	21,259	43,258	11,000	5,179	22,190	23,110	40,697	16,936	34,249	25,997	32,190	21,271
	부	279,698	94,941	17,806	31,501	8,186	3,730	16,854	11,952	29,589	10,782	20,214	9,312	8,652	16,179
	모	129,723	17,144	3,453	11,757	2,814	1,449	5,336	11,158	11,108	6,154	14,035	16,685	23,538	5,092
2016년	전체	385,819	104,232	20,355	41,941	10,757	5,465	20,185	22,307	36,986	15,717	32,418	24,641	30,632	20,183
	부	262,125	87,870	17,089	30,582	8,011	3,818	15,419	11,538	26,474	9,718	19,110	8,844	8,355	15,297
	모	123,694	16,362	3,266	11,359	2,746	1,647	4,766	10,769	10,512	5,999	13,308	15,797	22,277	4,886
2017년	전체	343,178	89,152	17,620	37,919	9,463	5,303	17,906	19,549	34,182	14,056	30,485	22,026	27,559	17,958
	부	230,910	74,870	14,775	27,239	6,995	3,535	13,314	10,199	24,224	8,741	17,934	8,112	7,537	13,435
	모	112,268	14,282	2,845	10,680	2,468	1,768	4,592	9,350	9,958	5,315	12,551	13,914	20,022	4,523
2018년	전체	333,624	78,865	17,513	37,052	10,179	5,990	17,251	18,281	39,258	13,469	28,765	21,202	27,123	18,676
	부	222,335	66,040	14,314	26,176	7,607	3,880	12,818	9,640	27,489	8,458	16,753	7,957	7,423	13,780
	모	111,289	12,825	3,199	10,876	2,572	2,110	4,433	8,641	11,769	5,011	12,012	13,245	19,700	4,896
2019년	전체	316,880	76,983	16,333	35,577	9,384	6,045	16,265	17,079	33,374	13,339	28,712	19,798	26,709	17,282
	부	208,795	63,639	13,300	24,835	6,957	3,806	11,965	9,117	22,924	8,531	16,526	7,463	7,231	12,501
	모	108,085	13,344	3,033	10,742	2,427	2,239	4,300	7,962	10,450	4,808	12,186	12,335	19,478	4,781
2020년	전체	291,511	66,366	14,801	33,186	8,882	5,608	14,975	15,219	31,559	12,077	28,585	18,760	25,612	15,881
	부	188,882	54,150	12,104	22,701	6,631	3,465	10,780	8,237	21,552	7,630	16,352	7,015	6,896	11,369
	모	102,629	12,216	2,697	10,485	2,251	2,143	4,195	6,982	10,007	4,447	12,233	11,745	18,716	4,512
2021년	전체	286,966	65,569	13,908	31,965	8,959	5,213	14,901	15,596	29,656	11,137	30,203	18,560	25,411	15,888
	부	183,144	53,260	11,279	21,598	6,572	3,084	10,656	8,389	19,193	7,008	17,075	7,048	6,715	11,267
	모	103,822	12,309	2,629	10,367	2,387	2,129	4,245	7,207	10,463	4,129	13,128	11,512	18,696	4,621
2022년	전체	282,199	60,981	13,561	30,696	9,031	5,153	15,808	14,562	29,840	10,835	30,638	18,639	26,468	15,987
	부	175,865	48,618	10,847	20,013	6,543	3,011	11,134	7,783	19,112	6,640	17,015	7,124	6,728	11,297
	모	106,334	12,363	2,714	10,683	2,488	2,142	4,674	6,779	10,728	4,195	13,623	11,515	19,740	4,690
2023년	전체	267,186	55,038	12,581	28,315	9,028	5,171	14,998	13,281	29,745	10,210	30,396	17,503	26,456	14,464
	부	163,228	43,189	9,953	17,947	6,664	2,990	10,292	7,163	18,992	6,295	16,699	6,646	6,467	9,931
	모	103,958	11,849	2,628	10,368	2,364	2,181	4,706	6,118	10,753	3,915	13,697	10,857	19,989	4,533
2024년P	전체	278,619	56,268	12,421	28,944	8,786	5,451	15,477	13,788	31,603	10,489	31,604	17,599	28,339	17,850
	부	168,202	43,827	9,845	17,905	6,303	2,975	10,389	7,360	20,005	6,350	17,594	6,733	6,583	12,333
	모	110,417	12,441	2,576	11,039	2,483	2,476	5,088	6,428	11,598	4,139	14,010	10,866	21,756	5,517

* 기타 : 농림어업, 광업,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부동산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단체·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고용·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외국기관 및 산업분류 미상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 10차 개정(2017년) 기준임

2-5. 시도별 육아휴직

2-5-1. 시도별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단위: %)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5년	전체	19.1	22.6	19.7	19.1	18.7	18.9	19.3	13.8	21.2	19.1	18.9	18.1	16.9	17.4	16.0	17.1	16.0	22.4
	부	0.6	0.7	0.6	0.6	0.5	0.5	0.6	0.2	1.0	0.6	0.8	0.7	0.8	0.6	0.6	0.5	0.5	1.6
	모	59.1	60.5	58.6	57.9	60.3	53.8	57.5	60.0	62.6	60.7	54.5	57.9	60.0	53.7	51.3	59.1	57.7	58.2
2016년	전체	20.0	23.8	20.4	20.1	19.0	19.6	20.0	14.6	22.6	19.9	18.6	19.3	17.3	18.1	17.0	17.6	16.6	24.1
	부	0.9	1.1	0.7	0.7	0.8	0.7	0.9	0.5	1.1	0.9	1.0	0.8	0.9	0.8	0.9	0.7	0.9	2.1
	모	60.4	62.3	60.0	60.1	59.8	56.0	58.1	61.4	65.0	61.8	54.2	61.5	61.6	54.0	52.6	60.3	57.9	61.4
2017년	전체	21.6	25.3	21.4	20.8	20.6	21.0	22.0	17.3	23.6	21.4	21.9	20.3	18.7	20.1	18.6	18.9	19.3	24.4
	부	1.8	2.1	1.8	1.4	1.6	1.4	1.6	1.4	2.2	1.6	2.0	1.4	1.6	1.5	2.0	1.3	2.5	3.0
	모	62.2	63.4	61.0	60.8	62.1	58.7	63.2	64.1	63.9	63.4	59.0	61.4	63.4	58.2	54.8	62.2	61.1	61.2
2018년	전체	22.5	26.2	22.5	21.2	21.8	22.6	22.9	18.5	25.7	22.3	23.4	21.6	19.4	21.4	20.7	20.0	20.0	25.9
	부	2.4	2.7	2.3	1.8	2.3	2.3	2.0	2.3	3.2	2.2	2.8	2.4	2.1	2.0	2.9	2.0	2.6	3.4
	모	62.9	63.8	61.8	61.2	61.8	60.2	63.6	66.6	67.7	63.8	60.1	63.7	63.4	59.1	58.1	62.5	61.5	62.6
2019년	전체	24.0	27.3	24.1	23.2	24.0	23.4	23.7	19.8	27.3	23.7	25.9	23.0	21.3	22.2	22.9	21.0	21.3	27.8
	부	3.0	3.0	2.7	2.2	3.2	3.0	3.1	3.1	4.4	3.0	3.5	3.2	2.7	2.8	3.8	2.6	3.2	4.5
	모	64.6	65.4	64.1	64.0	65.0	60.9	64.2	67.4	68.6	65.0	63.5	65.2	66.1	59.7	60.8	64.6	63.1	65.7
2020년	전체	25.5	28.2	26.3	24.4	25.5	25.1	26.3	20.8	28.9	24.9	27.8	24.6	23.4	23.4	25.1	23.7	22.9	28.8
	부	3.6	3.6	3.4	3.0	4.0	3.8	3.7	3.4	5.1	3.4	5.5	3.6	3.8	3.6	4.4	3.6	3.4	5.9
	모	65.7	65.6	66.5	65.1	65.9	63.2	67.0	67.9	69.7	65.6	65.7	66.9	66.9	61.3	63.4	66.5	65.2	66.2
2021년	전체	27.0	29.1	28.0	25.7	26.0	27.3	27.9	23.3	31.7	26.4	29.9	27.0	25.5	26.0	25.6	25.0	24.8	32.0
	부	4.3	4.0	4.3	3.6	4.5	3.9	4.6	4.1	6.6	4.1	6.6	5.0	5.1	4.1	4.9	4.2	4.0	6.7
	모	66.9	66.3	67.7	66.5	65.1	66.4	68.3	68.5	70.9	66.8	67.2	69.2	68.4	64.9	64.7	68.8	66.2	70.6
2022년	전체	31.2	32.7	31.9	29.5	31.4	32.1	32.7	27.7	35.1	30.9	34.2	30.0	29.7	30.0	30.2	29.4	29.2	36.5
	부	7.1	6.6	6.8	5.8	7.9	7.2	8.0	6.3	11.0	6.8	9.5	6.6	7.4	7.2	8.4	7.1	6.7	11.4
	모	71.1	69.5	72.2	69.7	72.0	70.2	71.9	74.2	72.9	71.6	71.5	73.2	73.2	68.2	68.6	72.2	71.2	74.2
2023년	전체	33.0	34.1	33.7	31.7	32.6	31.1	34.7	29.9	37.4	33.1	36.4	32.8	31.1	31.9	33.3	31.4	30.8	35.9
	부	7.5	6.8	7.1	6.5	8.1	6.4	8.2	6.6	11.7	7.3	10.3	8.1	8.5	7.3	8.7	7.3	6.7	11.3
	모	73.2	71.2	74.5	73.2	73.0	70.5	74.5	77.0	75.3	74.0	74.0	75.1	73.6	70.8	73.6	73.9	72.7	71.4
2024년[P]	전체	34.7	35.0	36.0	33.1	35.6	33.5	36.5	30.6	38.6	34.3	38.8	35.2	34.0	34.7	35.7	33.5	33.2	39.3
	부	10.2	8.8	10.5	8.4	10.9	9.8	11.7	8.1	13.8	9.9	14.4	11.6	11.3	10.2	11.8	10.4	9.2	15.5
	모	72.2	69.4	73.6	72.2	74.2	70.7	72.8	75.5	74.7	72.1	73.6	74.4	74.4	73.4	72.7	73.4	73.4	73.7

2-5-2. 시도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단위: 명)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5년	전체	78,395	18,647	4,682	3,330	4,248	2,286	2,507	1,497	639	20,760	1,617	2,250	2,916	2,123	1,853	3,301	4,297	1,111
	부	1,752	371	92	67	85	39	53	16	20	481	46	59	97	46	52	72	89	49
	모	76,643	18,276	4,590	3,263	4,163	2,247	2,454	1,481	619	20,279	1,571	2,191	2,819	2,077	1,801	3,229	4,208	1,062
2016년	전체	77,089	18,173	4,573	3,372	4,063	2,275	2,393	1,501	814	20,439	1,538	2,287	2,819	2,061	1,919	3,210	4,122	1,167
	부	2,375	521	112	84	123	57	71	39	26	643	57	67	108	61	69	87	159	64
	모	74,714	17,652	4,461	3,288	3,940	2,218	2,322	1,462	788	19,796	1,481	2,220	2,711	2,000	1,850	3,123	3,963	1,103
2017년	전체	73,962	17,036	4,234	3,099	3,828	2,108	2,342	1,513	935	19,732	1,605	2,138	2,764	2,030	1,865	3,026	4,193	1,117
	부	4,126	894	236	143	202	96	112	92	58	1,027	95	99	170	99	139	146	389	88
	모	69,836	16,142	3,998	2,956	3,626	2,012	2,230	1,421	877	18,705	1,510	2,039	2,594	1,931	1,726	2,880	3,804	1,029
2018년	전체	75,227	16,802	4,216	2,979	4,020	2,268	2,249	1,508	1,091	20,550	1,739	2,261	2,790	2,016	2,028	3,006	4,135	1,188
	부	5,278	1,066	286	169	279	149	129	139	89	1,394	132	175	215	125	192	211	384	97
	모	69,949	15,736	3,930	2,810	3,741	2,119	2,120	1,369	1,002	19,156	1,607	2,086	2,575	1,891	1,836	2,795	3,751	1,091
2019년	전체	76,136	16,842	4,147	3,143	4,176	2,218	2,152	1,543	1,177	20,921	1,887	2,207	2,851	1,968	2,247	2,942	4,089	1,270
	부	6,340	1,144	296	194	365	184	190	181	123	1,769	159	206	260	165	247	258	433	127
	모	69,796	15,698	3,851	2,949	3,811	2,034	1,962	1,362	1,054	19,152	1,728	2,001	2,591	1,803	2,000	2,684	3,656	1,143
2020년	전체	74,275	15,919	4,244	2,871	3,972	2,148	2,197	1,443	1,204	20,766	1,967	2,230	2,918	1,953	2,252	2,977	3,833	1,150
	부	6,871	1,206	353	229	405	206	201	170	133	1,878	243	219	322	196	253	305	390	145
	모	67,404	14,713	3,891	2,642	3,567	1,942	1,996	1,273	1,071	18,888	1,724	2,011	2,596	1,757	1,999	2,672	3,443	1,005
2021년	전체	77,391	16,238	4,512	2,989	3,911	2,399	2,369	1,527	1,443	21,976	2,011	2,426	2,986	2,051	2,154	3,004	3,971	1,227
	부	7,933	1,336	433	274	440	215	249	191	183	2,203	272	297	408	205	272	343	431	156
	모	69,458	14,902	4,079	2,715	3,471	2,184	2,120	1,336	1,260	19,773	1,739	2,129	2,578	1,846	1,882	2,661	3,540	1,071
2022년	전체	88,118	17,441	5,040	3,366	4,951	2,697	2,846	1,696	1,518	26,032	2,418	2,537	3,329	2,314	2,482	3,404	4,354	1,412
	부	12,486	2,071	663	419	791	364	430	266	291	3,595	403	362	548	347	438	543	656	264
	모	75,632	15,370	4,377	2,947	4,160	2,333	2,416	1,430	1,227	22,437	2,015	2,175	2,781	1,967	2,044	2,861	3,698	1,148
2023년	전체	88,268	16,996	5,086	3,475	4,974	2,377	2,923	1,765	1,443	26,386	2,435	2,817	3,299	2,355	2,685	3,293	4,427	1,293
	부	12,193	1,957	652	444	763	302	414	262	268	3,560	406	439	585	331	436	490	606	240
	모	76,075	15,039	4,434	3,031	4,211	2,075	2,509	1,503	1,175	22,826	2,029	2,378	2,714	2,024	2,249	2,803	3,821	1,053
2024년P	전체	96,810	18,046	5,503	3,886	6,094	2,548	3,155	1,894	1,559	28,736	2,627	3,102	3,788	2,637	3,064	3,686	4,842	1,370
	부	17,074	2,593	956	607	1,132	456	603	334	331	5,014	572	637	804	475	616	722	844	320
	모	79,736	15,453	4,547	3,279	4,962	2,092	2,552	1,560	1,228	23,722	2,055	2,465	2,984	2,162	2,448	2,964	3,998	1,050

* 거주지 미연계자 포함

2-5-3. 시도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

(단위: 명)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5년	전체	409,421	82,497	23,776	17,413	22,701	12,108	12,986	10,877	3,021	108,564	8,564	12,412	17,287	12,227	11,586	19,314	26,904	4,958
	부	279,698	52,278	15,945	11,777	15,796	7,928	8,718	8,408	2,032	75,143	5,684	8,627	12,587	8,357	8,078	13,846	19,608	3,132
	모	129,723	30,219	7,831	5,636	6,905	4,180	4,268	2,469	989	33,421	2,880	3,785	4,700	3,870	3,508	5,468	7,296	1,826
2016년	전체	385,819	76,241	22,450	16,811	21,356	11,597	11,975	10,291	3,604	102,519	8,271	11,832	16,278	11,367	11,260	18,194	24,882	4,833
	부	262,125	47,895	15,020	11,342	14,772	7,637	7,975	7,909	2,392	70,475	5,537	8,224	11,876	7,665	7,746	13,019	18,037	3,038
	모	123,694	28,346	7,430	5,469	6,584	3,960	4,000	2,382	1,212	32,044	2,734	3,608	4,402	3,702	3,514	5,175	6,845	1,795
2017년	전체	343,178	67,441	19,756	14,883	18,592	10,052	10,640	8,748	3,970	92,101	7,314	10,536	14,758	10,085	10,048	15,972	21,691	4,575
	부	230,910	41,973	13,203	10,023	12,757	6,624	7,110	6,532	2,598	62,612	4,756	7,214	10,668	6,767	6,896	11,339	15,465	2,894
	모	112,268	25,468	6,553	4,860	5,835	3,428	3,530	2,216	1,372	29,489	2,558	3,322	4,090	3,318	3,152	4,633	6,226	1,681
2018년	전체	333,624	64,222	18,725	14,049	18,403	10,050	9,819	8,154	4,237	92,230	7,423	10,474	14,385	9,424	9,807	15,020	20,702	4,595
	부	222,335	39,568	12,369	9,454	12,351	6,528	6,484	6,099	2,758	62,197	4,749	7,201	10,324	6,225	6,645	10,547	14,605	2,851
	모	111,289	24,654	6,356	4,595	6,052	3,522	3,335	2,055	1,479	30,033	2,674	3,273	4,061	3,199	3,162	4,473	6,097	1,744
2019년	전체	316,880	61,604	17,173	13,574	17,384	9,488	9,091	7,780	4,317	88,334	7,275	9,600	13,415	8,866	9,832	14,021	19,230	4,576
	부	208,795	37,585	11,163	8,966	11,517	6,150	6,036	5,760	2,780	58,865	4,554	6,532	9,496	5,848	6,545	9,863	13,437	2,836
	모	108,085	24,019	6,010	4,608	5,867	3,338	3,055	2,020	1,537	29,469	2,721	3,068	3,919	3,018	3,287	4,158	5,793	1,740
2020년	전체	291,511	56,378	16,140	11,786	15,581	8,563	8,352	6,921	4,162	83,277	7,080	9,060	12,445	8,339	8,955	12,565	16,724	3,993
	부	188,882	33,951	10,293	7,729	10,166	5,488	5,371	5,045	2,625	54,493	4,456	6,053	8,567	5,475	5,804	8,547	11,440	2,474
	모	102,629	22,427	5,847	4,057	5,415	3,075	2,981	1,876	1,537	28,784	2,624	3,007	3,878	2,864	3,151	4,018	5,284	1,519
2021년	전체	286,966	55,859	16,103	11,635	15,030	8,792	8,495	6,567	4,548	83,376	6,715	9,001	11,712	7,894	8,414	12,023	15,999	3,837
	부	183,144	33,377	10,075	7,555	9,696	5,505	5,390	4,618	2,771	53,776	4,127	5,923	7,941	5,050	5,504	8,158	10,654	2,321
	모	103,822	22,482	6,028	4,080	5,334	3,287	3,105	1,949	1,777	29,600	2,588	3,078	3,771	2,844	2,910	3,865	5,345	1,516
2022년	전체	282,199	53,386	15,823	11,398	15,753	8,409	8,705	6,122	4,321	84,180	7,065	8,470	11,211	7,702	8,206	11,596	14,924	3,871
	부	175,865	31,268	9,757	7,171	9,972	5,085	5,345	4,195	2,639	52,825	4,246	5,499	7,413	4,819	5,228	7,635	9,728	2,324
	모	106,334	22,118	6,066	4,227	5,781	3,324	3,360	1,927	1,682	31,355	2,819	2,971	3,798	2,883	2,978	3,961	5,196	1,547
2023년	전체	267,186	49,820	15,076	10,959	15,240	7,632	8,417	5,905	3,858	79,682	6,688	8,590	10,593	7,384	8,059	10,492	14,365	3,605
	부	163,228	28,695	9,123	6,817	9,474	4,687	5,051	3,952	2,297	48,852	3,945	5,422	6,907	4,524	5,005	6,697	9,109	2,131
	모	103,958	21,125	5,953	4,142	5,766	2,945	3,366	1,953	1,561	30,830	2,743	3,168	3,686	2,860	3,054	3,795	5,256	1,474
2024년P	전체	278,619	51,587	15,281	11,733	17,106	7,617	8,643	6,192	4,037	83,699	6,763	8,806	11,144	7,602	8,574	10,994	14,570	3,487
	부	168,202	29,319	9,102	7,193	10,418	4,658	5,137	4,127	2,394	50,793	3,972	5,492	7,133	4,656	5,207	6,955	9,126	2,062
	모	110,417	22,268	6,179	4,540	6,688	2,959	3,506	2,065	1,643	32,906	2,791	3,314	4,011	2,946	3,367	4,039	5,444	1,425

* 거주지 미연계자 포함

3. 1자녀 부모* 육아휴직 사용 현황(전기간 t~t+9년)

3-1. 자녀 연령별 육아휴직 사용 비율

(단위: %)

출생연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2012년	전체	73.5	5.1	4.0	3.8	3.3	3.6	11.5	7.7	4.5
	부	12.3	9.3	7.5	8.3	9.2	10.8	17.1	20.1	14.2
	모	81.9	4.5	3.5	3.2	2.5	2.6	10.8	6.0	3.2
2013년	전체	72.8	4.8	3.8	3.4	3.5	3.9	12.7	7.4	5.1
	부	12.0	9.9	7.6	8.5	9.5	10.3	19.0	17.2	15.0
	모	83.2	4.0	3.1	2.6	2.5	2.8	11.6	5.7	3.4
2014년	전체	71.2	5.0	3.7	3.8	3.8	4.6	12.8	7.8	5.3
	부	10.5	11.5	8.8	9.2	10.0	11.5	17.5	17.9	13.2
	모	83.5	3.6	2.7	2.7	2.6	3.2	11.8	5.8	3.7
2015년P	전체	70.1	4.9	4.1	4.2	4.4	4.4	13.5	7.6	5.1
	부	11.3	12.5	10.3	10.0	11.1	10.9	18.0	15.4	11.1
	모	83.8	3.1	2.6	2.8	2.8	2.9	12.5	5.8	3.7

* t~t+9년까지 t년 출생아만 있는 부모 중 육아휴직을 한 번이라도 사용한 부모

** 출생 전 및 자녀 나이가 8세를 초과하는 경우가 일부 포함될 수 있음(관계법상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이 가능)

3-2. 육아휴직 사용횟수 비율

(단위: %)

출생연도		계	1회 휴직	2회 휴직	3회 이상 휴직
2012년	전체	100.0	82.0	15.6	2.4
	부	100.0	90.9	8.4	0.7
	모	100.0	80.8	16.6	2.6
2013년	전체	100.0	81.6	16.0	2.4
	부	100.0	91.0	8.1	0.9
	모	100.0	80.0	17.3	2.7
2014년	전체	100.0	81.0	16.6	2.4
	부	100.0	89.9	9.1	1.0
	모	100.0	79.2	18.1	2.7
2015년P	전체	100.0	80.8	16.7	2.5
	부	100.0	89.5	9.6	0.9
	모	100.0	78.8	18.4	2.8

* t~t+9년까지 t년 출생아만 있는 부모 중 육아휴직을 한 번이라도 사용한 부모

4. 출산 전·후 모(母)의 취업비율 (1)

(단위: %)

출산연도	출산 전 (일)												출산일
	-360	-330	-300	-270	-240	-210	-180	-150	-120	-90	-60	-30	
2016년	51.1	50.7	50.3	49.9	49.2	47.2	45.5	44.2	43.2	42.2	41.3	40.5	39.8
2017년	52.2	52.0	51.6	51.2	50.7	48.7	47.0	45.7	44.7	43.7	42.8	42.0	41.4
2018년	53.9	53.6	53.3	52.9	52.3	50.4	48.8	47.6	46.6	45.7	44.9	44.0	43.3
2019년	55.6	55.3	55.0	54.6	54.1	52.3	50.7	49.5	48.6	47.7	46.9	46.1	45.5
2020년	58.0	57.7	57.4	57.0	56.5	54.7	53.3	52.2	51.3	50.4	49.6	48.8	48.2
2021년	60.2	60.0	59.7	59.4	58.9	57.3	55.9	54.9	54.0	53.3	52.6	51.8	51.3
2022년	62.2	62.0	61.7	61.4	60.9	59.4	58.2	57.2	56.5	55.8	55.1	54.4	53.7
2023년	64.6	64.4	64.2	63.9	63.5	62.2	61.1	60.2	59.4	58.7	58.0	57.2	56.6
2024년[P]	67.2	67.0	66.7	66.4	66.0	64.8	63.9	63.2	62.5	61.9	61.2	60.5	59.9

4. 출산 전·후 모(母)의 취업비율 (2)

(단위: %)

출산 연도	출산 후 (일)																							
	+30	+60	+90	+120	+150	+180	+210	+240	+270	+300	+330	+360	+390	+420	+450	+480	+510	+540	+570	+600	+630	+660	+690	+720
2016년	39.6	39.4	38.9	38.9	39.1	39.2	39.5	39.7	39.9	40.2	40.5	40.7	41.0	40.9	39.8	39.7	40.0	40.4	40.8	41.2	41.5	41.9	42.3	42.6
2017년	41.2	40.9	40.5	40.5	40.7	40.9	41.1	41.4	41.6	41.9	42.2	42.4	42.7	42.5	41.4	41.4	41.8	42.2	42.6	43.0	43.4	43.7	44.1	44.5
2018년	43.2	43.0	42.6	42.7	42.8	43.0	43.3	43.5	43.8	44.0	44.3	44.6	45.0	44.8	43.7	43.6	43.9	44.2	44.6	44.9	45.2	45.5	45.8	46.2
2019년	45.3	45.1	44.9	44.9	45.1	45.2	45.4	45.6	45.9	46.1	46.4	46.7	46.9	46.6	45.4	45.3	45.6	46.0	46.5	46.9	47.3	47.6	48.1	48.5
2020년	48.1	47.9	47.7	47.8	47.9	48.2	48.4	48.7	49.0	49.3	49.7	49.9	50.3	50.1	48.8	48.7	49.0	49.4	49.7	50.1	50.4	50.7	51.0	51.4
2021년	51.1	51.0	50.8	50.9	51.1	51.3	51.5	51.8	52.1	52.4	52.7	52.9	53.3	53.1	51.9	51.8	52.1	52.4	52.7	52.9	53.2	53.4	53.6	53.7
2022년	53.5	53.3	53.1	53.2	53.3	53.5	53.7	53.8	54.0	54.1	54.2	54.3	54.4	54.2	53.2	53.2	53.4	53.7	54.1	54.4	54.7	54.9	55.2	55.5
2023년	56.3	56.2	56	56.1	56.2	56.3	56.4	56.5	56.5	56.5	56.5	56.4	-	-	-	-	-	-	-	-	-	-	-	-
2024년[P]	-	-	-	-	-	-	-	-	-	-	-	-	-	-	-	-	-	-	-	-	-	-	-	-

5. 출산휴가자

5-1. 출산휴가자

(단위: 명)

	부	모
2019년	5,445	72,789
2020년	19,684	69,690
2021년	17,471	70,422
2022년	16,372	73,379
2023년	16,171	73,681
2024년[P]	18,293	80,348

5-2. 연령대별 출산휴가자

(단위: 명)

		계	30세 미만	30~34세	35~39세	40세 이상
2019년	부	5,445	515	2,115	2,165	650
	모	72,789	14,346	36,552	19,489	2,402
2020년	부	19,684	1,962	7,582	7,739	2,401
	모	69,690	13,145	35,042	18,791	2,712
2021년	부	17,471	1,674	6,528	6,862	2,407
	모	70,422	12,213	35,970	19,233	3,006
2022년	부	16,372	1,371	6,162	6,357	2,482
	모	73,379	11,414	38,213	20,185	3,567
2023년	부	16,171	1,255	6,150	6,189	2,577
	모	73,681	10,757	38,320	20,692	3,912
2024년[P]	부	18,293	1,340	6,885	7,144	2,924
	모	80,348	10,665	42,931	22,816	3,936

5-3. 기업체 규모별 출산휴가자

(단위: 명)

		계	300명 이상	50~299명	200~299명	100~199명	50~99명	5~49명	4명 이하	미상
2019년	부	5,445	1,026	2,642	695	1,070	877	1,613	123	41
	모	72,789	33,895	14,449	3,572	5,593	5,284	18,909	4,574	962
2020년	부	19,684	3,931	9,395	2,406	3,663	3,326	5,704	501	153
	모	69,690	32,413	13,787	3,322	5,399	5,066	18,243	4,404	843
2021년	부	17,471	3,185	8,498	2,096	3,425	2,977	5,175	478	135
	모	70,422	32,974	13,964	3,316	5,389	5,259	18,350	4,232	902
2022년	부	16,372	3,045	7,627	1,979	3,010	2,638	4,991	568	141
	모	73,379	32,987	14,913	3,464	5,765	5,684	19,444	4,769	1,266
2023년	부	16,171	3,033	7,267	1,792	2,910	2,565	5,224	530	117
	모	73,681	31,573	14,963	3,399	5,708	5,856	20,398	4,684	2,063
2024년[P]	부	18,293	3,042	8,082	1,922	3,167	2,993	6,267	636	266
	모	80,348	33,190	16,427	3,552	6,278	6,597	22,739	5,686	2,306

5-4. 산업별 출산휴가자

(단위: 명)

		계	제조업	건설업	도매및 소매업	운수및 창고업	숙박및 음식점업	정보 통신업	금융및 보험업	전문·과학 기술업	사업시설· 지원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사회 복지업	기타*
2019년	부	5,445	2,778	171	619	158	61	450	100	452	269	34	152	201
	모	72,789	11,374	1,779	8,179	2,244	1,021	3,869	6,930	9,221	4,623	3,071	15,483	4,995
2020년	부	19,684	9,844	659	2,185	630	229	1,671	427	1,689	916	112	637	685
	모	69,690	10,692	1,568	8,156	2,050	1,086	3,835	6,271	8,835	4,244	3,026	15,085	4,842
2021년	부	17,471	8,550	588	2,056	579	175	1,532	402	1,477	823	95	566	628
	모	70,422	10,689	1,619	8,062	2,156	1,107	3,964	6,465	9,138	3,948	2,910	15,239	5,125
2022년	부	16,372	7,707	613	2,028	558	161	1,521	407	1,365	737	96	566	613
	모	73,379	10,870	1,685	8,411	2,309	1,151	4,471	6,215	9,478	4,032	3,076	16,222	5,459
2023년	부	16,171	7,274	620	1,964	490	201	1,612	474	1,461	758	100	591	626
	모	73,681	10,496	1,694	8,373	2,223	1,266	4,558	5,667	9,551	3,825	3,102	16,793	6,134
2024년[P]	부	18,293	7,681	732	2,266	578	297	1,766	534	1,884	829	140	686	900
	모	80,348	11,299	1,716	9,250	2,326	1,551	5,079	5,655	10,611	4,027	3,153	18,778	6,903

* 기타 : 농림어업, 광업,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단체·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고용·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외국기관 및 산업분류 미상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 10차 개정(2017년) 기준임

부 록

1. 육아휴직통계 개요 ····· 58

2. 자주하는 질문 ····· 59

1. 우리나라의 육아휴직제도 ····· 59
2. 육아휴직통계에서 공표하는 지표의 종류와 활용도 ····· 61
3. '전체 육아휴직자' 지표에서 시작일 기준의 의미 ····· 62
4. '출생아 부모의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률'의 의미 ····· 62
5.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대상)자' 지표에서 출생아 대비로 보는 이유 ··· 63
6. 잠·확정 체계 공표 이유 ····· 63
7. 관련통계 ····· 64
8. 시도별 육아휴직자 유사통계와 차이 ····· 65
9. 국외 사례 ····· 65
10.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 66

3. 한국표준산업분류 ····· 67

부록 1 육아휴직통계 개요

□ 작성 목적

○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의 현황을 파악하여 저출생 대응 관련 정책 및 일·가정 양립 정책 수립·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법적 근거

○ 통계법 제1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승인된 일반통계(승인번호 제101092호)

□ 작성 연혁

○ (2020.12.) 2019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 최초 공표
○ (2021.12.) 2020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 공표
○ (2022.08.) 육아휴직통계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 (2022.12.) 2021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 공표
○ (2023.12.) 2022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 공표
○ (2024.12.) 2023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 공표

□ 작성 주기 및 공표 시기

○ 작성 주기: 연간
○ 공표 시기: 작성기준 년 익년 12월 잠정(익익년 12월 확정)

□ 모집단 및 작성 대상

○ 모집단: 기준시점 현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부모
○ 작성대상:

- 법률상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근로자(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 및 공무원・교사
- 고용보험 자료의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근로자

□ 활용 행정자료

○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출산휴가급여 수급자료,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자 자료, 인구동향 출생·사망 자료, 취업활동통계등록부 등 11종

부록 2 자주하는 질문

1.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 임신 중이거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목적으로 사업주·임용권자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 육아휴직 제도 >

(2024년 기준)

	근로자*	공무원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공무원법
대상	· 근로자(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	· 공무원
자격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시 · 육아휴직 시작 전일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	·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시 · 여성 공무원의 임신/출산 시
기간	· 자녀 1명당 1년 이내	· 자녀 1명당 3년 이내
분할사용	· ('08. 6월 이후) 1회 분할 가능 · ('20. 12월 이후) 2회 분할 가능	· 제한 없음

* 근로자의 세부 육아휴직 사용은 사업장별 취업규칙에서 별도 규정(근로기준법)

□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하여 육아휴직 대상자 조건이 되는 자녀 연령 및 근로기간은 아래와 같이 변하여 왔음

< 민간(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자녀연령		근로기간	
'88. 4월	· 생후 1년 미만(母만 가능)	'01. 11월	· 재직기간 1년 이상
'95. 8월	· 생후 1년 미만(父도 가능)	'18. 5월	· 재직기간 6개월 이상
'06. 3월	· 생후 3년 미만		
'10. 2월	·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14. 1월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21. 11월	· 임신 중 가능(母)		

< 공무원(국가공무원법) >

자녀연령		근로기간
'95. 1월	· 생후 1년 미만(부모 모두 가능)	· 관련 제한규정 없음
'02. 1월	· 생후 3년 미만 · 임신 또는 출산시 가능(母)	
'07. 3월	·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11. 5월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관련 급여 및 수당지급 규정은 아래와 같이 변하여 왔음

<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민간		공무원	
'01. 11월	· 육아휴직급여 근거규정 신설(월 20만원)	'02. 1월	· 육아휴직수당 근거규정 신설(월 20만원)
'02. 12월	· 월 30만원	'03. 1월	· 월 30만원
'04. 2월	· 월 40만원	'04. 4월	· 월 40만원
'07. 4월	· 월 50만원	'07. 1월	· 월 50만원
'11. 1월	· 통상임금의 40%(50~100만원)	'11. 1월	· 월봉급액의 40%(50~100만원)
'14. 10월	·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 첫 1개월 급여 상향 (통상임금 100%, 상한 150만원)	'15. 1월	·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 첫 1개월 급여 상향 (월봉급액 100%, 상한 150만원)
'16. 1월	·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통상임금 100% 지급기간 연장(1개월 → 3개월)	'16. 1월	·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월봉급액의 100% 지급기간 연장 (1개월 → 3개월)
'17. 1월	· 둘째 자녀에 두 번째 육아휴직자 상한 200만원	'17. 7월	· 둘째 자녀에 두 번째 육아휴직자 상한 200만원
'17. 9월	· 첫 3개월 통상임금 80%(70~150만원)	'17. 9월	· 첫 3개월 월봉급액의 80%(70~150만원)
'18. 7월	· 위 자녀 구분 규정 삭제 (모든 두 번째 휴직 상한 200만원)	'18. 7월	· 위 자녀 구분 규정 삭제 (모든 두 번째 휴직 상한 200만원)
'19. 1월	· 두 번째 육아휴직 상한 250만원으로 인상 · 4개월 이후 통상임금 50%(70~120만원)	'19. 1월	· 두 번째 육아휴직 상한 250만원으로 인상 · 4개월 이후 월봉급액의 50%(70~120만원)
'20. 2월	·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30일 이상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 지급		
'20. 3월	·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는 첫 3개월 상한 250만원	'20. 8월	·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는 첫 3개월 상한 250만원
'22. 1월	·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70~150만원)로 인상 · (3+3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300만원) 지급 ·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 ~3개월 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상한 150만원	'22. 1월	· 4개월 이후 월봉급액의 80%(70~150만원)로 인상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여 공무원인 부모가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경우 첫 3개월 육아휴직 수당을 월봉급액의 100%(~250만원) 지급 ·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 ~3개월 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상한 150만원
'24.1월	·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육아휴직 급여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450만원) 지급	'24.1월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여 공무원인 부모가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경우 첫 6개월 육아휴직 수당을 월봉급액의 100%(~450만원) 지급

2. 육아휴직통계에서 공표하는 지표의 종류와 그 활용도는 무엇인가요?

지표 산식 및 활용도

1. 전체 육아휴직자

☞ 임신 중이거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부모의 규모 가늠

2-1. 출생아 부모 중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자

$$\frac{t\text{년도 출생아 부모 중 } t\text{년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자}}{t\text{년도 출생아수}} \times 100$$

☞ 출생아 대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규모 가늠

2-2. 출생아 부모 중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대상자

$$\frac{t\text{년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조건을 충족시키는 자}}{t\text{년도 출생아수}} \times 100$$

☞ 출생아 대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실질 대상자의 규모 가늠

2-3. 출생아 부모의 출생연도 육아휴직 사용률

$$\frac{t\text{년도 출생아 부모 중 } t\text{년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자}}{t\text{년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조건을 충족시키는 자}} \times 100$$

☞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출생아 부모 중 t년도에 실제 육아휴직을 한 사람의 비중 파악

[참고지표] 출생아 부모의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률

☞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출생아 부모 중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한 사람의 비중 파악

3. 1자녀 부모* 육아휴직 사용 현황(전기간 t~t+9년)

* t~t+9년까지 t년도 출생아만 있는 1자녀 부모 중 해당 자녀가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한 번이라도 사용한 부모

☞ 자녀 연령별 육아휴직 사용 및 분할사용 현황 분석

4. 출산 전·후 모(母)의 취업비율

연도별 출산 母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2년 기간 중 30일 간격 각 기준일에 행정자료 상 취업(상용/임시/사업소득) 기록이 있는 경우를 집계

☞ 출산시기를 전후하여 여성의 취업비율 변화 파악

5. 출산휴가자

☞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 수급자료를 활용하여 출산일 기준 부와 모의 출산휴가자 규모 파악

☞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 수급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함에 따라 공무원, 교직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대상에서 제외**

☞ 배우자 출산휴가(父)의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배우자**만 집계

3. '전체 육아휴직자' 지표에서 시작일 기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 당해연도에 이미 전년부터 **육아휴직 중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연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을** 의미함

(예시)

유형	육아휴직 사용 기간	'24년 육아휴직자 포함 여부
A	'23년 12월 ~ '24년 11월	X
B	'24년 1월 ~ '24년 3월, '24년 9월 ~ '25년 1월	○
C	'23년 12월 ~ '24년 3월, '24년 9월 ~ '25년 1월	○

○ 당해연도에 육아휴직 중인 사람을 통계로 집계하지 않은 이유는 행정자료 상 잦은 육아휴직 종료일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포착이 어렵기 때문임

4. '출생아 부모의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률'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 기존 '출생아 부모의 출생연도 육아휴직 사용률'의 출생연도 내 육아휴직 시작자만 집계하는 점을 보완하는 지표로, 자녀 출생 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시작자를 포함하여, 익년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부모*까지 확대 파악 가능

* 예) 법적 출산휴가 보장기간(단태아 45일, 다태아 60일) 이후 익년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부모 등

육아휴직 대상자	육아휴직자
2023.1.1.~2023.12.31. 기간에 출생한 자녀의 부모	2023.1.1.~2024.12.31. 기간 중 출생일 12개월 이내



5.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대상)자' 지표와 같이 육아휴직자나 대상자를 출생아 대비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출생아가 감소하면 육아휴직 제도 활용 정도와 상관없이 육아휴직자 규모가 작아질 수 있으므로, 출생아수 변화를 고려하여 육아휴직자 규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6. 육아휴직통계를 잠·확정 체계로 공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육아휴직통계는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자료,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자 자료로 육아휴직자를 파악하고 있음

○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시작시점과 육아휴직급여 신청시점 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 2년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음

>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신청 시점과의 시차, 관련 행정자료 입수시기, 통계의 시의성 등을 고려하여 잠·확정 체계(1년 시차)로 공표하고 있음

< 잠정·확정 공표 체계>

	2024년 육아휴직자 자료	
	잠정치	확정치
공표시점	2025년 12월	2026년 12월
활용 행정자료	**(고용보험)** '25년 8월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사람 중 실제 육아휴직 시작일이 '24년 중에 발생한 사람 **(건강보험)** '24년 12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유로 건강보험 납부유예를 신청한 사람 중 실제 육아휴직 시작일이 '24년도 중에 발생한 사람	**(고용보험)** '26년 8월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사람 중 실제 육아휴직 시작일이 '24년 중에 발생한 사람 **(건강보험)** '25년 12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유로 건강보험 납부유예를 신청한 사람 중 실제 육아휴직 시작일이 '24년도 중에 발생한 사람

7. 육아휴직과 관련된 통계는 무엇이 있나요?

○ 고용노동부 및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민간 부문의 육아휴직자 수를 공표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음

	국가데이터처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통계명	육아휴직통계	일가정양립실태조사	고용행정통계
통계종류	가공	조사(표본)	보고
작성년도*	2010년 이후	2017년 이후	2012년 이후
작성주기	1년	1년	월
활용자료 /표본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11종 행정자료 및 통계자료	5,000개 사업체 표본조사 (종사자수 5인 이상 사업체)	고용보험
포괄범위	민간 및 공공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군인 제외)	민간 (산업분류 A.농림어업 및 O.공공행정 제외)	민간 (고용보험 가입자)
집계기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육아휴직급여 지급일 기준(초회 수급)

* 작성년도: 육아휴직자 관련 통계 작성 기준

7-1. 인구동태패널 통계의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 육아휴직통계는 기준연도 출생아 부모 중 법률상 육아휴직 대상자가 기준연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 그 비중을 파악하여 작성하고, 인구동태패널통계는 패널 분석을 통해 '15년~'20년 동안 첫 자녀를 출산한 자를 3년간 추적하여 육아휴직 사용 여부에 따라 작성함

○ 육아휴직통계와 인구동태패널통계는 작성목적 및 작성대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수치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움

8. 고용행정통계에서 시도별 육아휴직 급여 초회수급자수를 제공하고 있는데 육아휴직통계와 시도별로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육아휴직통계에서는 등록센서스 인구DB(11월 1일 기준) 거주지 기준으로, 고용행정통계는 사업체 소재지 기준으로 작성되고, 육아휴직 급여를 본사에서 일괄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 차이가 있음

9. 외국의 육아휴직 관련 통계는 어떤 사례가 있나요?

○ OECD에서 각 국가의 출생아 100명당 남·여 육아휴직자 수를 공표하고 있음

-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자 수이나, 대상 자녀 연령을 충족하는 모든 육아휴직자 수를 집계한 것으로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자 수(남·여 각각)가 100을 넘는 경우가 발생

○ 국가별 세부 기준(대상 자녀 나이, 분할사용 여부, 포괄범위, 유급·무급 등)이 상이한 상태에서 수집한 자료로 국가 간 비교 시 유의 필요

< OECD 육아휴직 통계* (2023년 기준) >

(단위: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자 수)

국가	남	여	국가	남	여
한국	21.9	63.3	일본	26.3	58.4
노르웨이	116.9	145.2	스웨덴	387.3	447.9
뉴질랜드	2.2	96.7	에스토니아	49.6	218.0
독일	66.7	188.2	오스트리아	4.1	115.8
룩셈부르크	123.5	85.3	이탈리아	25.4	69.6
리투아니아	42.6	120.1	체코	5.5	287.8
벨기에	30.8	115.8	포르투갈	97.0	107.4

* 출처: OECD > Family Database > PF2-2 > Parental leave users

10.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父)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만 지원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내지 제6항 및 시행령 별표1을 고려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를 결정함

* 우선지원 대상기업 배우자 출산휴가(5일)급여 고용보험 지급 ('19.10.1. 시행)

■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1]** <개정 2025. 10. 1.>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제12조 제1항 관련)

산업분류	분류기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C	500명 이하
2. 광업	B	300명 이하
3. 건설업	F	
4. 운수 및 창고업	H	
5. 정보통신업	J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N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9. 도매 및 소매업	G	200명 이하
10. 숙박 및 음식점업	I	
11. 금융 및 보험업	K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비고: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부록 3 한국표준산업분류

A 농업, 임업 및 어업
- 01 농업
- 02 임업
- 03 어업

B 광업
- 05 석탄,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06 금속 광업
- 07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 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C 제조업
- 10 식료품 제조업
- 11 음료 제조업
- 12 담배 제조업
-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15 가죽, 가방, 신발 제조업
-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 17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4 1차 금속 제조업
-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28 전기장비 제조업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32 가구 제조업
- 33 기타 제품 제조업
-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D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 36 수도업
- 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 3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39 환경정화 및 복원업

F 건설업
- 41 종합 건설업
- 42 전문직별 공사업

G 도매 및 소매업
-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H 운수 및 창고업
-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50 수상운송업
- 51 항공운송업
-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 55 숙박업
- 56 음식점 및 주점업

J 정보통신업
- 58 출판업
-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60 방송업
- 61 우편 및 통신업
-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63 정보서비스업

K 금융 및 보험업
- 64 금융업
- 65 보험 및 연금업
-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L 부동산업
- 68 부동산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70 연구개발업
- 71 전문 서비스업
-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 76 임대업; 부동산 제외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P 교육 서비스업
- 85 교육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86 보건업
- 87 사회복지서비스업

R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4 협회 및 단체
- 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 97 가구내 고용활동
- 98 달리 구분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
- 99 국제 및 외국기관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2017년) 기준임